www.acrc.go.kr

청렴韓 세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입 법 예 고 안   공 청 회

2016. 5. 24(화) 14:00~16:30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

국민권익위원회

진 행 순 서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개 회	14:00~14:02	02’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황인선 (청탁금지법 시행령 T/F팀장)
	14:02~14:05	03’	● 인사말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참석자 소 개	14:05~14:08	03’	● 주요 참석자 소개	김병섭 (서울대 교수)
발 제	14:08~14:28	20’	●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토 론	14:28~16:10	102’	● 지정토론(13인) · 강수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유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김성돈(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유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재만(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 · 김홍길(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 민상헌(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 · 박재현(중앙일보 논설위원) · 송준호(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이병무(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 · 이원섭(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 이재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 임연홍(한국화훼협회 부회장)	토론자
질 의 응 답	16:10~16:30	20’	● 정리 및 질의응답	김병섭 (서울대 교수)
폐 회	16:30	-	● 폐회	황인선 (청탁금지법 시행령 T/F팀장)

목 차

발제문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토론 강 수 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9

토론 고 유 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77

토론 김 성 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3

토론 김 유 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93

토론 김 재 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 103

토론 김 홍 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109

토론 민 상 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 121

토론 박 재 현 (중앙일보 논설위원) 125

토론 송 준 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131

토론 이 병 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 139

토론 이 원 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151

토론 이 재 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159

토론 임 연 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169

참고자료

청탁금지법 – 시행령(안) 2단 비교표 173

발제문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곽 형 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토론자〉

- **강수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유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김성돈**(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유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재만**(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
- **김홍길**(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 **민상헌**(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
- **박재현**(중앙일보 논설위원)
- **송준호**(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이병무**(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
- **이원섭**(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 **이재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 **임연홍**(한국화훼협회 부회장)

••• Contents

Ⅰ.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안) 구성 체계 ···· 5

1. 청탁금지법 체계의 개요 ···· 5
2. 시행령(안) 체계의 개요 ···· 6

Ⅱ. 금품등 수수 금지 등 ···· 8

1.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 ···· 8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17

Ⅲ. 부정청탁 금지 등 ···· 21

1.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 21
2.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 24

Ⅳ.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 27

1. 개요 ···· 27
2. 시행령(안)상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체계 ···· 30

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54

Ⅵ. 공공기관 운영 및 지원 ···· 60

Ⅰ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안) 구성 체계

1 청탁금지법 체계의 개요

- 청탁금지법은 5개의 장, 총 24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부분은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국가 등의 책무(제3조), 공직자등의 의무(제4조)를 규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을 법 적용대상자로 규정

-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부분은 부정청탁 행위유형(제5조제1항) 및 예외사유(제5조제2항),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를 규정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행위유형을 열거하면서, 공공기관과 국민의 활발한 의사소통의 보장을 위해 7가지 예외사유를 제시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부분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예외사유(제8조), 신고 및 처리(제9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제11조)을 규정

  ※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형사처벌)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과태료 부과)의 수수를 금지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제1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제13조·제14조),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제15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16조), 부당이득의 환수(제17조), 비밀누설 금지(제18조), 교육·홍보(제19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제20조)을 규정

- <제5장> 징계(제21조), 벌칙(제22조), 과태료 부과(제23조), 양벌규정(제24조)에 대해 규정

2 시행령(안) 체계의 개요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5개의 장, 총 30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며 **법률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8가지 위임사항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법 제7조제4항), 부정청탁 신고·처리, 기록·관리, 공개 등에 필요한 절차(법 제7조제8항),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법 제8조제3항),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필요한 절차(법 제9조제8항),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등 신고 및 초과사례금 신고절차(법 제10조제1·2·5항), 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법 제14조제2항)

- **<제1장>** 총칙부분은 목적(제1조) 및 윤리강령(제2조)을 규정

-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부분은 부정청탁 신고방법(제3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제4조) 및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제5조)를 규정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부분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제6조, 별표 1),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제9조, 별표 2),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방법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제7조, 제8조), 외부강의등 및 초과사례금 신고방법(제10조, 제11조), 반환비용의 청구(제12조)를 규정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기관인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제13조~제28조)

- **<제5장>** 징계 및 벌칙 부분은 징계기준의 마련, 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규정(제29조~제30조)

참고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	
금품등 수수 금지 등	**금품등 수수 금지**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제6조, 별표 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제9조, 별표 2)
부정청탁 금지 등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제4조) ▸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방법**(제5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 부정청탁의 신고방법(제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방법(제7조) ▸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제8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제10조) ▸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제11조) ▸ 금품등,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비용의 청구(제12조) ▸ 신고내용의 확인 등 및 의견청취등(제13조 · 제14조) ▸ 신고의 이첩,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조사기관의 처리,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등(제18조 · 제20조 · 제21조) ▸ 수사 개시·종료 통보(제22조) ▸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등(제23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30조)	
보호·보상 등	▸ 포상금 등의 지급 업무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제24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제25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제26조)	
공공기관 운영 및 지원	▸ 윤리강령(제2조) ▸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제19조) ▸ 교육(제27조) ▸ 징계기준(제28조) ▸ 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제29조)	

Ⅱ 금품등 수수 금지 등

1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

< 가액기준(시행령안 제6조, 별표 1 >

제6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제6조 관련)

1.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한다.

2. 금품등의 종류
 가.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말한다.
 나.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다.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 가목의 음식물과 나목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5만원으로 한다.

가.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예외사유

■ 금품등의 정의

- 금품등은 금전, 물품, 유가증권 등의 재산적 이익,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및 채무면제·취업 제공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총칭하는 개념

※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대법원 1979.10.10, 선고, 78도1793, 판결)

-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 (편의 제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 '금품등'의 정의(법 제2조제3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
  - 다만, 친교·사적인 거래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인정**

- 이 법의 예외사유는 **「형법」 등 다른 전체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금지되고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립** 가능

※ (예시)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예외사유 불성립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도 8가지 예외사유 중의 하나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 필요
- 또한, 시행령에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 설정 필요**

< 금품등의 수수 금지(법 제2조제3호)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범위

◎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일체를 말함

◎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함

◎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함

■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

◎ 가액기준 설정시 중점 고려사항

- (**입법취지**) **금품등 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국민의 인식수준**) 예외사유의 가액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수준 및 수용범위

※ 일반국민 대상 가액기준 **설문조사 결과**('15.7월, 1,500명 대상) 다수 응답
 -음식물:3만원(46.5%), 선물:5만원(35.3%), 경조사비:5만원(45.5%), 10만원(37.5%)

- (**처벌범위**)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됨

- (**경조문화**) 경조사비의 경우 우리 사회의 전통적 사회 관습으로서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님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로 설정

- **입법취지, 국민의 인식수준,**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같이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그 중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상한액으로 함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기준은 **5만원** 이하로 함

-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기준은 **10만원** 이하로 함

나. 선물의 가액기준 및 수수 제한

■ 가액기준 내의 선물 수수 제한

- 금품등 수수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인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물의 가액기준을 5만원** 이하로 설정

-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가액기준 5만원 이하**로 제공되는 선물은 받을 수 있음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되지만,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예외로 허용되는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여도 형사처벌 대상(「형법」상 뇌물죄)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5만원 이하 선물**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 목적을 벗어나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예시)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가액기준 내의 선물 상담 체계 구축

< 담당관(법 제20조 >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법 제20조의 청탁방지담당관은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고 받을 수 있음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공직자등이 선물을 받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해야 함

- 청탁방지담당관의 상담은 단순한 자문요청에서 금품등의 자진신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하게 보호**

- 공직자등은 상담 결과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 및 반환·인도**해야 함

참고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 및 예외사유

■ 미국 :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

◎ 공직자는 금지된 출처로부터 또는 공직자의 지위로 인해 제공되는 선물 수수를 금지, 1회 20 USD, 연간 50 USD 이하 선물은 예외

※ 금지된 출처 :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소속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 일본 : 5,000엔

◎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

◎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5,000엔(약 50USD)**이 넘는 증여 등을 받는 경우 각성각청의 장 등에게 보고

※ 보고 사항 : 금액, 받은 연월일, 증여 등을 한 사업자 등의 명칭 및 주소 등

■ 영국 : 25파운드~30파운드

◎ 판단이나 청렴성에 타협을 가져올 수 있을 지도 모를 선물, 접대 등 다른 이익을 어떤 누구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하되, 각 부처 및 시 자체적으로 선물·접대 수수 기준 마련

※ **런던시 공무원**의 경우 25파운드(약 40 USD) 이상의 선물·접대에 대해 관리자(Monitoring Officer)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영국 외부무 공무원**의 경우 30파운드(약 47USD) 이상의 선물·접대 수수 금지

■ 독일 : 25유로

◎ 연방정부의 경우 **25유로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선물 수수 기준 설정하되, 금액 초과 선물 수수는 기관 담당자로부터 **사전 승인** 필요

※ 연방내무부 25유로, 연방법무부는 5유로 이하 선물 허용

다. 경조사비의 가액기준 및 수수 제한

- **경조사비**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사회 관습으로서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액기준을 10만원 이하로 설정**

- 공직자등은 **부조 목적**으로 **가액기준 10만원 이하**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는 당연히 허용되지만,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10만원 이하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대상(「형법」상 뇌물죄)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면 허용되지 않음**

  - 부조의 목적인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상호 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도록 하는 제도 운영**

라. 음식물의 가액기준 및 수수 제한

- 금품등 수수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인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식물의 가액기준을 3만원 이하로 설정**

-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기준 3만원 이하**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받을 수 있음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는 당연히 허용되지만,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3만원 이하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대상(「형법」상 뇌물죄)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재건축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이를 관할하는 구청의 주택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18,750원과 12,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사안에서,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 · 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

-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도록 하는 제도 운영**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상한액(시행령안 제9조, 별표 2 >

제9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 관련)

1.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	40	30	20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은 구분된 직급에 상응하는 소속 공직자등의 직급을 직제, 임용상당계급,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	30	20

가.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다)의 경우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시간당 100만원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회 100만원으로 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3)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공공기관에 파견 나와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4)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 등의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5) 1)부터 4)까지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상 지위·직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라.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 이유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 공직자등의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반면, **강의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도 가지므로 외부강의등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제한

사례금 상한액 기준

- 민간부문은 **자율성 및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여 공공부문과 상한액을 달리 설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존 지급기준인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간당**(기고는 1건당) **상한액**을 설정

-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사례금은 초과 시간에 관계 없이 **상한액의 1/2 한도까지만 지급 가능**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공무원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등의 직급을** 직제, 임용상당계급, 보수 및 여비 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해야 함**

◎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 언론사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강사의 수당 등 지급기준'** 상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의 경우 1시간당 최고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참고

- 다만, 공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상한액을 **1회 100만원**으로 설정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의 구분기준**이 1회 100만원 초과 여부인 점을 고려

※ 공무 관련 외부강의등

- ■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공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공무, 공공기관에 **파견** 나와 수행하는 공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 등의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 ■ 공무상 지위·직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

- **기고의 경우**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인지 공무 관련 외부 강의등 인지를 불문하고 **1건당 100만원**으로 규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 학교 교직원, KBS·EBS임직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상한액 기준을 적용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Ⅲ 부정청탁 금지 등

1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가. 개 요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전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심을 차단

- 법상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조치 가능**(제7조제4항)

- 법률에 규정된 조치 중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은 직무 배제 정도가 일시적이나, '전보'는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

구 분	내 용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담당자의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만 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직무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
전보	해당 공직자등에 대한 보직 변경을 의미

나. 시행령(안)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 시행령(안) >

제4조(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전항 각 호의 조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정 이유

-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할 수 있는 그 밖의 조치'를 **시행령에 위임**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보' 외의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은 직무 배제 정도가 일시적

  - 반면, **'전보'는**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므로 **사실상 징계조치로 악용·남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

주요 내용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할 수 있는 **그 밖의 조치로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과 '사무분장의 변경'**을 규정

  -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은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담당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

  - '사무분장의 변경'은 해당 업무의 수행이 지속적으로 제한되지만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므로 다른 조치와 차이 있음

◎ 소속기관장에게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선택 재량을 부여하되, **전보는 다른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선택 가능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법 및 시행령(안) 상 조치사항 >

구 분	내 용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시행령안)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추가로 담당을 지정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자를 변경하거나 직무참여 정지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필요한 조치사항
직무참여 일시중지 (법률)	직무 담당자의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만 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법률)	직무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
사무분장의 변경 (시행령안)	전보 등 보직의 변경 없이 과내에서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경우
전보 (법률)	해당 공직자등에 대한 보직 변경을 의미

2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가. 개 요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의 예방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법률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만**을 공개범위로 명시하고 인적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 공개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아 시행령에서 인적사항을 공개대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음

    ※ 「변호사법」은 공개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인적사항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민의 접근성과 부정청탁 예방효과의 강화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

나. 시행령(안)상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 시행령(안) >

제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ㆍ제8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지 여부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부정청탁 예방 효과의 달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법 제7조제7항ㆍ제8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는 부정청탁의 일시, 목적, 유형, 소속 부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조치 및 부정

청탁에 따른 제재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7항 · 제8항에 따른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 또는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 그 사유가 있은 날
2. 그 외의 경우 : 부정청탁에 대한 조사 · 재판 등의 처리절차가 종료된 날

제정 이유

- 법 7조제8항에서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법 제7조제7항에서 규정한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 필요**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 내용

- **(공개 여부 결정)** 소속기관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

※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지 여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그 밖에 부정청탁 예방 효과의 달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공개범위**) 법에서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만**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공개범위를 위임하지 않아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 **「변호사법」은 공개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인적사항을 공개대상으로 명시

- 공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부정청탁의 일시, 목적, 유형, 소속부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조치,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내용 등을 명시

◎ (**공개시기**) 과태료 재판이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그 외의 경우 부정청탁에 대한 조사·재판 등 처리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공개방법**) 국민의 접근성과 부정청탁 예방효과의 강화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절차**) 공개 여부의 결정은 소속기관장의 재량이나, **청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Ⅳ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1 개 요

■ 법상 위반행위 신고 체계

< 신고 및 처리 절차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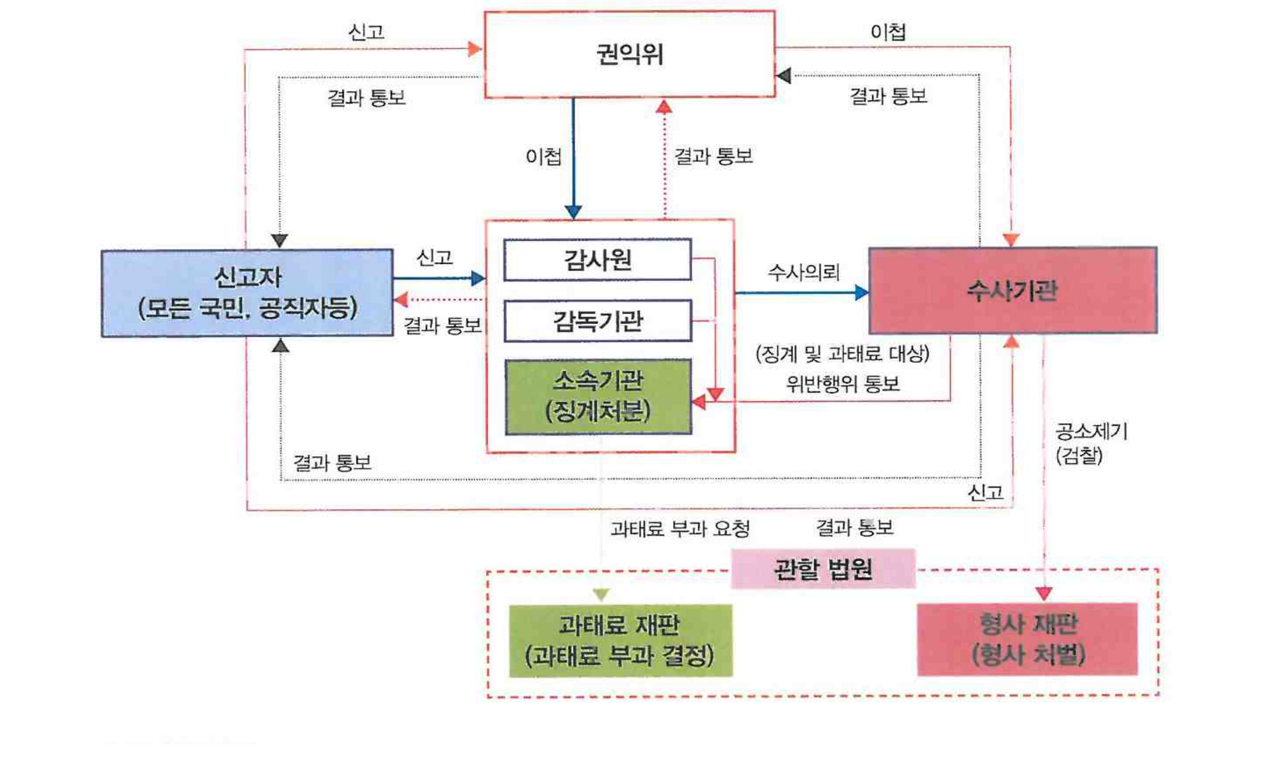

◎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신고주체 : 공직자등)**의 신고**와 **법 제13조제1항**(신고주체 : 누구든지)**의 신고**가 있음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 이행으로서의 신고**임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하는 신고**임

법상 위반행위 신고의 방법

-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함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무책임한 신고, 허위신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증거를 함께 제출**할 필요

- 신고는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법상 신고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수사를 실시**
  - **조사·감사·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조사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이첩 받은 경우만 해당)에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구

이의신청

- 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 가능**

재조사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등의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에 재조사 요구** 가능
  - 재조사 요구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 제시 필요**
- **재조사 요구를 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

2 시행령(안)상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체계

신고 방법

< 시행령(안) >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방법)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취지 및 이유
3.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부정청탁을 한 자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 ·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부정청탁의 내용 등 신고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취지 및 이유
3.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 ·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의 반환 여부 등 신고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신고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 이유

- **법 제7조제8항, 제9조제8항**에서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과 증거 등 제출에 관해서는 법에서 이미 규정

- 법 제7조, 제9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시 **무책임한 신고· 허위 신고의 차단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므로 지리적·상황적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한 구술신고 근거 마련 필요**

  ※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의 시기가 중요**

주요 내용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 부정청탁자·금품등 제공자의 인적사항 등의 신고 내용을 **신고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양벌규정의 적용을 위해 위반행위자가 법인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법인등의 명칭 등 법인등 관련 사항도 신고사항으로 명시**

- 부정청탁이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시 **무책임한 신고나 허위 신고의 방지를 위해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시**

  - 다만,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규정

-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 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먼저 구술신고 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

< 시행령(안) >

제8조(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제6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
2.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위원회 : 소속기관장에게 송부
   나. 소속기관 :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세입조치
3.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처리 절차(이의신청 및 재조사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다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함에 있어 금품등을 인도 받은 상태 그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촬영·녹화한 사진·영상과 제23조에 따른 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함에 있어 부패·멸실 등으로 처리·반환이 어려운 경우 인도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정 이유

- 법 제9조제2항 단서, 제6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주요 내용

- 인도 받은 금품등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

  -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재판,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다가 **과태료 부과 결정,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세입조치**

  -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처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 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부패ㆍ멸실 등으로 처리·반환이 어려운 경우 **인도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

- 공공기관의 장은 금품등을 인도 받은 즉시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를** 하고, **위반행위의 기록과 함께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관**

- 공공기관의 장은 금품등을 처리함에 있어 **인도 받은 상태 그대로 처리**하고 촬영ㆍ녹화한 사진ㆍ영상과 위반행위 기록을 함께 송부

- 공공기관의 장은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

■ 외부강의등 신고와 초과사례금 신고

< 시행령(안)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소속, 직급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장소
3. 강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세부 내역
5.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사례금 액수나 강의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신고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한다)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정 이유

- 법 제10조제1항, 제5항에서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과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신고사항 및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주요 내용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사례금 총액**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법령을 벗어난 고액의 사례금 수수를 방지

  ※ 신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외부강의등의 일시, 장소 및 강의시간, 외부강의등의 유형 및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세부 내역,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사례금 액수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등 **종료 후 즉시 보완**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신고의무 부담 완화

- 법령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그 액수와 반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는 절차 마련

  -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에 신고해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반환해야 할 초과 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7일 이내** 통지

  - 신고자는 통지를 받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함)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 반환비용의 청구

< 시행령(안) >

제12조(반환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관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정 이유

- 법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에 따라 **금품등이나 초과사례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

※ 청탁금지법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금품등을 수수할 의사가 없는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고 **반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여 반환을 활성화

주요 내용

- (청구권자) 소속기관장에게 공직자등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인도한 공직자등**

- (청구요건) 금품등이나 초과사례금을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의 비용으로 제공자에게 직접 반환한 경우 **실제 소요한 비용** 청구

  - 비용청구 시 실제 소요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청구기관)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를 한 기관**에 청구

  ※ 소속기관 외의 기관에도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소속기관에 청구하도록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 신분 노출 우려**

신고내용의 확인

< 시행령(안) >

제13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제7조제2항·제6항, 제9조제1항·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3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 및 위원회는 제1항제4호, 제2항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 및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사기관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 제출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등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정 이유

- 법 제7조제8항, 제9조제8항에서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와 관련한 **신고 접수기관의 신고 확인·처리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확인ㆍ처리 등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필요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4조(신고의 처리)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고 확인ㆍ처리과정에서 신분공개 불안으로 신고가 위축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절차 마련** 필요

- 위반행위 신고의 확인·처리, 포상금·보상금 지급 업무 등의 처리를 위해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

주요 내용

- 신고 접수기관의 신고 확인 ·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확인사항 : 신고사항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 신고내용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완 요구** 근거 마련

- 조사기관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다만 **종결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체 종결

- 신고의 확인 ·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이 경우 신고접수기관에 조사기관의 처리 절차, 신분공개 절차에 관한 **설명의무** 부과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 제출요구 가능**

  ※ 위원회가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서면으로 통지

  -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등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도** 가능

신고의 이첩·종결·송부

< 시행령(안) >

제15조(신고의 이첩)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2.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속기관
3. 법에 따른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4.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등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조사기관의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송부)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정 이유

- 법 제7조제8항, 제9조제8항에서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와 관련한 **공직자등의 신고**에 대한 위원회의 처리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받은 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하는 경우 **이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 필요

주요 내용

이첩

- (이첩사유)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감사원,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이첩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이 법에 따른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으로 이첩

    ※ 금품등의 제공자(甲기관 소속 공직자 A)와 수수자(乙기관 소속 공직자 B)가 모두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각 공직자등의 소속기관(甲기관과 乙기관)으로 각각 이첩하여 처리

- (이첩기간) 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이첩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이첩방법) 신고사항 및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도 함께 이첩**하되,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인적사항은 제외
  - 신고를 이첩하는 경우 증거자료인 인도 받은 금품등도 함께 이첩

종결

- (종결사유) 허위신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신고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사유 명시**

- (재신고) 종결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 가능

○ **송부**

- (송부사유)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신고자 통지) 위원회는 송부하는 경우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 ▪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

- (위원회에 통보) 해당 공공기관은 송부받은 신고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조사기관의 처리

< 시행령(안) >

제18조(조사기관의 처리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제7조제2항 · 제6항, 제9조제1항 · 제6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송부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첩 받은 신고를 다른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첩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등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등 결과 등의 통보) ① 조사기관이 법 제7조제2항 · 제6항, 법 제9조제1항 ·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와 위원회(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조사기관 또는 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포상금 ·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3.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조사기관이나 위원회가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정 이유

- 법 제7조제8항, 제9조제8항에서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와 관련한 **공직자등의 신고**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처리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공직자등을 포함한 제3자 신고**의 처리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 필요

주요 내용

- **(조치방법)** 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조사기관은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실시
  - **소속기관** :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징계절차의 진행
  - **감독기관 · 감사원**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공소제기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종결사유) 익명신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신고 등** 조사기관이 조사등을 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 위원회가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사유를 준용

- **(재이첩)**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다른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이첩 가능

- **(결과통지)** 조사기관이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등을 **신고자와 위원회**에 통보할 의무 부과

  -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통지

- **(불복절차 고지)**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해 불복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이의신청 방법 및 기한도 함께 통지**

< 조사기관 처리 절차도 >

조사등 착수	신고자의 직접 신고, 위원회로부터 이첩, 법 위반사실 인지	
조치 사항	소속기관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 시 →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필요 시 → 법원에 통보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 시 →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필요 시 → 소속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 필요 시 → 소속기관에 통보
결과 통보	조사등 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자와 위원회(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에 서면으로 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재조사

< 시행령(안) >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고자는 제2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3항의 기간 내에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4항 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다시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⑥ 조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리거나 위원회에 통보(위원회로부터 재조사를 요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제6항에 따른 조사등 결과의 통지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정 이유

- 법 제14조제5항에서 규정한 **이의신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따른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내용**을 규정할 필요

-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신고에 따른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 필요

※ 청탁금지법

제14조(신고의 처리)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 (신청방법) 조사등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청**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
- (결과통지)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
- (재조사 요구)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에 재조사 요구**
- (재조사)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요구를 받은 **조사기관은**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재조사 실시**
  -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조사 결과를 신고자 또는 위원회**(위원회로부터 재조사 요구를 받은 경우)**에 통보**
- (재 이의신청 불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 시행령(안) >

제22조(수사 개시 · 종료 통보) 수사기관은 법 제7조제2항 · 제6항, 제9조제1항 · 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정 이유

- 법 집행과정에서 **공직자등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확보 마련 필요
  - 법 집행 과정에서 단순한 의혹만으로 공직자등이 수사를 받게 되면 선량한 공직자등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

주요 내용

- 수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등의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

  ※ 수사개시일 : 실무상 인지사건의 경우 **입건일**(인지보고서 작성 후 전산입력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된 때), 고소고발 사건은 **담당자 배당일**

■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등

< 시행령(안) >

제23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8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반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3. 위반행위 관련 신고 내역과 처리 내역
4.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해당 금품등의 종류·성질·가액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과 제8조제2항의 사진·영상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과 같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1항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등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이유

- 법 제7조제8항에서 법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9조제8항에 명시적으로는 아니나 법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 가능

※ 청탁금지법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 내용

- (기록사항)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 또는 관련 신고 내역과 그 처리 내역, 인도받은 금품등의 종류·성질·가액 등

- (보관방법)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기록과 인도된 금품등의 사진·영상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관**
  -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과 같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을 관리

- (제출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등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시행령(안) >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민감정보,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제정 이유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신고자의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수집·관리·분석을 위한 법령상 근거 필요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이 법에 따른 신고의 접수·확인·처리나 보호·보상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근거 마련

V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가. 개 요

■ 법상 보호 대상 신고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특성상 공직자등과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

-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필요**

◎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주체가 **'누구든지' 하는 신고**와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로 구분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주체가 '누구든지'이건 '공직자등'이건 상관없이 **이 법에 따른 신고는 모두 보호의 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 법상 보상 대상 신고

○ **포상금·보상금 지급 대상**은 법 제15조제5항·제6항에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한 경우로 규정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포상금·보상금 지급대상은 **문언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이므로 제7조제2항·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는 제외**

-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는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 이행으로서의 신고**임

■ 법상 신고자 보호의 내용

○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

※ 비밀보장(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보도 등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 조치,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

○ 청탁방지담당관의 상담은 단순한 자문요청에서 금품등의 자진신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하게 보호**

나. 시행령(안)상 보호·보상 관련 규정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시행령(안) >

제24조(포상금 등의 지급 업무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5항 · 제6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검토 사항과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정 이유

- 부패신고와 달리 **포상금 · 보상금 지급대상이** 위원회 외에 **다른 모든 공공기관에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까지** 확대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

- (소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포상금 · 보상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
  ※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
- (소위원회 기능) 시행령이 설치근거이므로 **심의 · 의결 기능은 없고 사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시행령(안) >

제25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정 이유

- 위원회 외의 다른 기관에 대한 법 위반행위의 신고는 포상금 지급기관인 **위원회가 신고의 존재나 내용을 알기 곤란**
  - 신고사건을 직접 처리한 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받을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 지급 가능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시행령(안) >

제26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지급업무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서약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보상금 지급신청 등 보상금ㆍ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서약 실시 결과를 제1항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정 이유

- 법 제15조제5항ㆍ제6항에서 규정한 **포상금ㆍ보상금 지급업무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세부사항 규정 필요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 한 법 위반행위의 신고 외에 모든 공공기관에 한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해 위원회가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므로 보상금·포상금 지급 수요 증가 전망
  - 특히, 법 적용대상 기관에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같은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어 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 포함**

- 포상금ㆍ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체계 구축 필요

주요 내용

- 법 위반행위 신고기관과 보상금 지급기관 간의 **정보화시스템 관리·운영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의 장은 법 위반행위 처리실적,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서약 실시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

  - 보상금 지급기관인 **위원회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보상금·포상금 지급업무 수행

-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담당자의 지정** 필요

Ⅵ 공공기관 운영 및 지원

윤리강령

< 시행령(안) >

제2조(윤리강령)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마목에 따른 언론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의 청렴성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윤리강령이 법 또는 이 영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정 이유

-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외에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해당

- 사립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내부규정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주요 내용

-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윤리강령에 규정될 사항을 명시**

  ※ 윤리강령에 규정될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이권개입·청탁행위의 금지·제한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
  -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업무의 청렴성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자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위원회는** 통보받은 윤리강령이 법 또는 시행령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보완 요청**

청렴자문위원회

< 시행령(안) >

제1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법 시행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 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위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청렴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정청탁 해당 여부 및 선물 수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해야 함

- 청탁방지담당관은 단순한 자문에서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인지 여부까지 **판단하고 상담하는 업무까지 수행**
  -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지정되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전문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청탁방지담당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자문사항 : 부정청탁의 공개,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법 시행·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공공기관별로 운영**되는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
  - 위원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 공공기관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면서, 충분한 인력풀의 확보를 통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위원의 자격요건**도 규정

- 그 밖에 위원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함

  ※ 공공기관의 장이 정할 사항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 업무 대행자,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 등

< 시행령(안) >

제27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 및 서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 및 서약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교육 및 서약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정 이유

- 법 제12조제1호, 제19조에서 규정한 교육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필요

※ 청탁금지법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함

  -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교육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함

■ 징계기준

< 시행령(안) >

제28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재규범의 성격

-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규범**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제공한 국민들도 동일하게 처벌**

-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제재규범은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의무적 징계처분의 대상**

- 또한, **법원의 부과절차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실상 **사법적인 제재에 준하며**, 윤리적 책임에 따른 **명예적 제재 효과가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일반적인 과태료의 경우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벌적 성격으로 공공기관에서 부과절차 진행

  ※ 「공직자윤리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로 제재하나 임의적 징계 대상

의무적 징계에 따른 징계기준의 마련

-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직자등에게 **의무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 공공기관마다 마련되어 있는 징계기준에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반영하거나 새롭게 제정하여 **징계의 공정성·형평성 도모 필요**

  - 공공기관은 위반행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함

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

< 시행령(안) >

제29조(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 ①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 제1호 단서,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5항 단서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이유

- 부정청탁,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 미신고·미반환 등의 경우가 **과태료 부과 대상**

  -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으로 과태료 부과

-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형법」 등 다른 법률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시 형사처벌 가능**

  ※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부과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92헌바38)

  -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규정(법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5항 단서)

- **과태료 부과 취소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주요 내용

◎ (취소방법)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

◎ (취소신청)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직접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취소신청

◎ (취소신청 방법)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

토론문 1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 수 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강 수 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성격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은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 근절하여야 할 관행을 없애고 국가의 대내외적 신뢰를 회복·증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통제장치로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였다.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가 되는 허용 금품등의 가액 및 외부강의 사례금의 상한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조치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의 주체가 되는 공직자 등은 물론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초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의 규범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탁금지법상 대표적인 금지 및 처벌규정인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죄(제8조 제1항)는 형법상 뇌물수수죄와 그 구성요건에서 전자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이를 요구한다는 점, 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수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증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다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죄 역시 약한 정도의 불법을 가진 뇌물죄 유사의 범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뇌물죄에서의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유사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법정형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금품등 수수금지 행위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초과

사례금 수수행위의 성격을 원칙적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점(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초과 사례금 수수행위에 대하여 반환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금액(1회 100만 원, 매 회계 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형법상 뇌물죄의 성립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은 낮은 정도의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동안 공직자에 대한 청탁문화, 다양한 형태의 금품제공 관행 등을 뇌물죄 기타 제재를 통해 뿌리뽑기 어려웠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탁이나 금품등 수수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정의하고, 한편으로는 주관적 요건에 대한 소송절차에서의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어 효과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범자인 공직자등과 국민에게 일의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립학교 교원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초과사례금 규제의 타당성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1) 초과사례금 규제의 법적 성격

발제문에 의하면, 제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강의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정당한 금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공직자등의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만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제8조 제3항에서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수수금지 금품등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수수는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초과사례금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높은 금액의 사례금을 받았음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청탁금지법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규제이다), 사례금 중 강의등 용역제공의 반대급부로서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은 과거 또는 미래의 공무상 행위에 대한 보상(reward)의 의미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비록 직무에 관한 대가성을 가지는 뇌물(bribery)과는 구별되지만 공무상 행위에 대한 부당한 보상을 통하여 공공의 신뢰를 간접적으로 훼손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등의 직무는 강의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강의등에 대한 사례금은 보상의 의미를 가질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보상으로서의 사례금을 규제하는 다른 입법으로는 미국 연방형법상 불법사례죄 (Illegal Gratuity, 18 U.S.C. 201(c))가 있다. 불법사례죄는 공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로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직·간접적으로, 그가 행하거나 행할 공무상 행위를 위하여 또는 그 행위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동의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다 (2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불법사례죄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공무상의 지위에 있는 이상 포괄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이익의 수수도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 낮은 불법의 뇌물죄로서 특정한 공무상 행위에 대한 막연한 영향력 행사의 의도를 가진 경우 성립된다는 견해, 뇌물죄와 별개의 범죄로서 특정한 공무상 행위에 대한 막연한 영향력 행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순수하고 구체적인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다.

외부강의등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사례금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규정은 미국 연방형법상 불법사례죄와는 다른 유형의 금지규정이긴 하나, 특정한 공무등에

대한 막연한 영향력 행사 또는 구체적 보상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점에서 불법사례죄의 입법취지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초과사례금 규제의 타당성

발제문에 의하면 민간부문은 자율성 및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여 공공부문과 상한액을 달리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비공무원과 공무원,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초과사례금을 단순히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하여 상한액 수준으로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받는 (초과)사례금이 특정한 공무등에 대한 부당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불법사례금인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초과사례금 금지 규정은 원래 공무원이 본래 직무가 아닌 강의등에 대한 대가의 형식으로 불법사례금 내지 뇌물을 수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 공직자등의 범위에 민간부문 특히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게 되면서 초과사례금 금지규정도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는 다름 아닌 강의와 연구, 학생지도 등 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외부 강의나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의 강의 역시 교원 자신의 직무 그 자체라고 보아야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강의가 직무 그 자체가 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강의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초과사례금이라고 하여 뇌물죄의 변형인 불법사례금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정액 이상의 강의료를 수령한다고 하여 공공의 신뢰에 대한 훼손 또는 훼손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향후 민간부문, 특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초과사례금 금지규정에 관한 현행 청탁금지법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시행령은 민간부문의 경우 다시 공무와 공무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 강의료 상한액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현행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시행령과 같은 최소한의 구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향후 보다 근본적으로 공무에 대하여만 초과수수료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신고 및 처리체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역할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체계는 크게 신고 등 업무 총괄과 조사 및 처리의 두 단계로 나뉜다. 업무의 총괄기관은 위원회로, 조사 및 처리기관은 법위반 발생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다.

신고 및 처리체계에 대한 시행령의 규정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몇 가지 의문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도 조사기관의 조사권한을 가진다고 볼 것인가?

위원회는 조사기관은 아니지만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서류 등 제출 요구,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등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추후 조사기관이 종국처분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위원회와 조사기관 간 불필요한 중복조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원회 역시 위의 범위 내에서는 조사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행령에 이첩 외에 청탁금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송부제도를 두는 것은 적법한가?

위원회는 이첩 또는 종결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게 송부하도록 하여(시행령 제17조), 이첩 외에 송부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송부제도는 청탁금지법상 제도인 이첩(제14조)과 동일한 효과 또는 이첩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령으로 송부제도를 두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원회가 종결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송부의 대상은 시행령의 문언상 ‘해당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감사원, 수사기관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송부는 이첩과 달리 법령상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송부받은 해당 공공기관 역시 그 종결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처리 지연, 송부와 재송부의 반복 등을 통해 그 종국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송부제도에 기간의 제한, 종결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기관(위원회로 하면 될 것이다)의 명시 등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문 2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 유 경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 청탁금지법이 이 사회를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

고 유 경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은 앞 다투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농어민과 화훼농가가 몰락할 것이고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호들갑이다. 연간 한우판매액 중 800억 원이 줄어들 거라고 하고 굴비, 전복, 난은 산업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고 고급음식점은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과연 이 정도로 고가의 선물시장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었고 그 금액이 제한됨으로 인해 내수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지경이라면 하루빨리 이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왜곡된 내수시장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직자가 청탁이 동반된 금품을 받지 않음으로써 공직사회가 청렴해지도록 하기위한 청탁금지법의 여파가 생산농가에 미친다고 해서 이 법을 시행하지 않거나 완화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본질은 놓치지 않으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할 일이다.

朝鮮日報

1920년 3월 5일 창간

chosun.com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

김영란法에 시름 커진 농·어민

'5만원 넘는 선물 금지'로
韓牛 8000억원 판로 막혀
蘭·화환·인삼 농가 등도
"아예 산업 자체 없애려 하나"

농·축·수산업 관련 단체들
"재논의 안하면 투쟁 나설 것"

(조선일보,2016년 5월 12일자 1면 기사)

1. 사립학교교원과 언론인이 공직자인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법 제정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이 문제는 일반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보면 논란이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 교원이건 공립학교 교원이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아무 차이도 없다. 오히려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더 많고 그 규모도 크다. 지난해 말 서울 강남의 사립 초등학교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도 무죄로 판결이 나고 서대문구의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160만원을 받았는데 유죄가 확정된 일이 있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런 판결은 일반인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고 사립학교에서는 금품을 제공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언론인도 언론 본연의 기능을 하기위해서는 이권에 개입하거나 유관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청탁을 받는 것이 관행으로 유지되어서는 곤란하다. 차제에 언론이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언론으로서의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사회 상규 상 제공 가능한 금품의 가액에 관한 문제이다.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 원 이하로 설정한 것에 대해 사회 상규 상 적절하다고 본다. 발제에서도 밝혔듯이 이 금액은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결코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미국은 한 번에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 1년에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금지했고 유럽 선진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도 3만 원에서 5만 원을 넘지 못한다.

그동안 한우나 고급 굴비를 선물로 받아먹던 공직자들이 일정부분 직접 구입해서 먹게 될 것이고 선물비용이 절감된 기업에서는 그 비용으로 직원들에게 선물하면 우려하는 내수경기 침체는 그리 크게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 고급음식점은 좀 어려워

질 수 있지만 그만큼 서민들이 운영하는 평범한 식당들은 손님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직장상사나 교사에게 제공하던 선물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에서는 그동안 내 돈 주고 사먹을 수 없었던 한우를 한번쯤은 사먹을 여력이 생기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가. 공직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상한액을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장관급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이상 30만원, 5급이하 20만원이하이고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에는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 20만원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발제문에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 공직자등의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강의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도 가지므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 취지에는 동의하나 직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직급이 높을수록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더 높고 직급이 내려갈수록 그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강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차등적용하지 말고 상한액을 통일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나.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즉 교원과 언론인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 또는 1회 100만원,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어떤 강의가 한 시간에 100만원을 받을만한 가치를 가진 강의인가? 사회 상규 상 시간당 100만원, 회당 100만원 기고 1건당 100만원은 과하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든 교원, 언론인이든 차등을 두지 말고 50만 원 정도를 상한액으로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부모라고하면 바로 치맛바람을 떠올리는 시절이 있었다. 학교에 교사를 만나러 가려면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하는지 고민하며 선생님의 기색이 안 좋거나 아이가 상을 못 받아 오거나 심지어 체벌을 당하고 와도 내가 돈을 안줘서 그러나 하며 줘야

하나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노력과 학교와 교사의 자정노력으로 촌지는 많이 없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교사는 촌지를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 챙기고 학부모들은 그런 교사를 만났을 때 단호히 뿌리치지 못하고 고민하게 된다. 내 아이를 맡겨놨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이 이제 조금 남아있는 뿌리까지 깨끗이 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다른 걱정 없이 교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토론문 3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성 돈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김 성 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는 말

청탁금지법은 한국사회에서 법치주의의 실현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법치주의는 문제해결이 법이 아니라 혈연, 지연 또는 학연에 이루어진다는 ‘인치’와 사안이 법이 아니라 금전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돈치’에 의해 결정적으로 무너진다. 청탁금지법은 법치의 최대 걸림돌인 두가지 요소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규율하는 법이다. 부정청탁은 법치를 인치로 흐리고 금품수수는 법치를 돈치에 물들게 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인체의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 식생활습관을 바꾸듯 우리 사회의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사회속의 개인의 잘못된 문화의 허위의식을 고쳐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와 목표를 가진 청탁금지법이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안에 대해 시민사회에서의 반응이 뜨겁다. 시행령안에 대한 세간의 평가와 같이 시행령안이 모법의 정신을 최대한 따르면서도 현실을 반영하여 절충과 타협책을 찾아가려는 노력의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목표에 100퍼센트 공감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시행령이 모법의 근간을 훼손하거나 모법의 취지를 반감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시행령이 절충과 타협이라는 입법의 묘미를 살리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평가와 제안을 보태고자 한다.

Ⅱ. 평가와 제안

■ 선물 등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에 해당할 경우에도 무한정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가액이하의 선물등만 수수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6조, 별표 1)

- 시행령안의 내용 가운데 관심이 가장 뜨거운 부분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상 기준을 일부 현실화하여 조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입장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나는 시행령(안)이 정하고 있는 상한선 이하의 가액에 해당할 경우에는 음식물 또는 선물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안)이 모법의 취지를 후퇴시켰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시행령(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그 상한선을 더욱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한다. 앞의 견해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값과 선물가액의 상한선과 각각 3만원과 5만원이므로 3만원짜리 음식 접대와 5만원짜리 선물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인양 의미부여를 한다. 기업에서는 벌써부터 티에프티(TFT)라는 신조어가 나돌기도 한다. Three/Five/Ten이 가이드라인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티에프팀까지 만들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 하지만 모법인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시행령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액의 상한선을 3/5로 정한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상한선이하의 식사대접이나 선물을 무조건 허용하려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이 있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수뢰죄나 배임수증재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이 분명하면 사교/의례목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발제자료 8-9면 참조). 더 나아가 원활한 직무수행목적이란 공직자등의 내부 구성원간 또는 기관과 내부구성원 사이의 원활한 직무수행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부 민원인이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3만원 음식물과 5만원 선물을 제공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여전히 금지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에 따르면 일정 가액 이하의 허용되는 음식 제공과 선물이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한 전적으로 법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예컨대 오로지 사교 또는 의례목적이라면 가액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원이하의 선물은 아무런 문제없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시행령안이 모법의 취지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지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이미 학교사회에서는 '촌지제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 커진다.
- 민원인으로부터 또는 장차 민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방으로부터 3만원이나 5만원 때문에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불사할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불방법의 변경 등의 편법을 동원하여 이 상한선을 넘으려는 의도가 끊임없이 그리고 다양하게 시도되겠지만 지불방법 및 거래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기업 및 민간영역을 상대하는 언론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하지만 (사립 및 공립학교의)교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준 금액 이하의 선물공세와 식사접대가 사교/의례목적하에 이루어지더라도 그러한 선물공세와 식사접대를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은 학부모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할 경우 결국 해당 학생들에 대해 미칠 상대적인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어떤 이는 이를 '뇌물'은 아니지만 제공하지 못하는 이에게 불이익 내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차원의 '조공'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아무리 소수의 금액이라도 촌지가 근절되고 있는 문화가 이미 정착되고 있는 마당에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3/5의 가액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결국 시행령안이 모법의 취지를 오히려 퇴색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교원의 경우는 그 직무(업무)의 특성상 학생과 학부모는 - 현재적이든 잠재적이든 - 모두 직무행위의 상대방이고 그러한 한

점에서 보면 이들의 접촉은 항상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선물이든 식사대접이든 담당 학생들과 그 학부모로부터 받는 선물이나 제공받은 음식물은 모두 3/5의 상한선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금지되는 금품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선물이나 음식물은 본질적으로 사교/의례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따른 해석은 이렇게 해야 한다. 사교/의례목적으로 교원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 이하 가액의 선물이나 음식물은 학생이나 그 학부모등이 해당 교원의 직무(업무)대상자로부터 벗어난 상태, 즉 예컨대 학생이 졸업한 후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어 이 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 이러한 엄격한 해석론을 기초로 삼아 자체적으로 내부 윤리강령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시행령안에도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안 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다 더 강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의 필요성을 명시함(안 제14조)

- 청탁금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수사기관 등과 같은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고 처리,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효율적인 처리가 사실상 어렵고 신고자 보호가 미흡해 질 우려가 있다(발제자료 p38~p40 참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행령(안) 제14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상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총괄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그 결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업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일정한 의견청취 또는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충분치 못할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조사기관’에 대해서도 조사의 결과 뿐 아니라 경과 및 사건의 구체적 내용등에 대해 설명, 자료 또는 서류의 공유를 요구

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행령안 제20조에는 조사기관이 위원회에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이와 같은 조사기관에 의한 일방적 서면 통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위원회가 부패방지를 위한 제반 업무(신고자의 이의신청 안 제21조 참조)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 대해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종결권을 부여하고 있음(안 제16조)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등 조사기관의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이첩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종결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동시에 시행령(안)에 위원회의 종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종결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신고자의 재신고까지 허용). 하지만 남용장치로서 신고자에게만 통지하기 보다는 종결의 구체적 사유 뿐 아니라 신고자에게 통지한 사실 그 자체 까지도 서면의 기록으로 남길 것을 요구함으로써 위원회의 종결권 남용을 사후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이른바 '문지기'에 대한 관리 장치는 시행령안 제23조의 '위반행위의 기록 관리의무'와는 다른 차원의 보다 포괄적인 사후적 기록 관리의무이다.

■ 위원회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규정신설의 필요성(안 22조)

- 이 규정은 수사기관은 신고 등에 따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집행과정에서 공직자등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발제자료 p50 참조). 청탁금지법 제7조제8항, 제9조제8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도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에 유사 규정이 있다.

- 이와 같이 해당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법집행과정에서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발제자료 p. 50 참조). 하지만 이러한 통보절차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도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수사권 남용 통제장치를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의무가 있는 위원회에 대해 수사종결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기관이 그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할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drap)시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호 통제와 견제가 가능하게 하여 그 결과 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정보공유가 입법화되지 못한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통보의무는 시행령안 제20조의 ‘조사등결과의 통보의무’와는 달리, 수사종결‘사유’에 대한 통보의무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보의무는 예컨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24조(정보분석실장은 검찰총장에 제공된 특정정보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집하여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수사기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활용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된다(여기서의 결과통보는 적극활용: 기소의견송치, 기소, 고발추징/소극활용: 기소중지, 내사중지, 누적자료 활용/활용하지 않음: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탈세혐의없음).

Ⅲ. 나오는 말

거듭 강조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인치와 돈치라는 법치주의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취지와 잘못된 사회의 관행과 근절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청산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활성화의 필요성을 내세워 청산해야 할 과거와 현실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시민사회가 동의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태도이다. 농축수산업 또는 화훼산업 등의 물량이 50퍼센트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그만큼

고액의 유흥비와 고가의 선물 등이 뇌물 또는 조공의 형식으로 공직자등에게 흘러 들어가 인치와 돈치를 활성화시켜 우리 사회를 반법치로 만들었음을 반증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농축수산업과 요식업계, 화훼업계는 그동안 부정부패를 방조하였음을 자인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축수산업은 고액의 상품구성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농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모두가 만족해할만한 생산적인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농축수산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법이다. 화훼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꽃이 소비되는 패턴을 바꾸어야 한다. 허위의 식과 과소비로 각종 경조사에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으로서 꽃을 선물하고, 주부들의 시장바구니의 한모퉁이에 꽃이 들어가도록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선물과 음식물을 소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법치를 가로막는 인치와 돈치에 동참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을 뿐이다.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대접과 선물은 진정한 환대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환심과 상대방을 부패의 사슬에 얽어매거나 굴종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청탁금지법은 장차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정상화하고 환대와 환심을 착각하게 하는 돈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꾸어나갈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길은 결국 이윤과 탐욕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 인치와 돈치의 희생자가 된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이 길을 걷기 위해 내딛어질 청탁금지법의 발걸음을 법리와 논리의 문제가 막을 수는 없다. 우리가 만약 청탁금지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고쳐가면 될 일이다.

토론문 4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유 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김 유 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시행령안 공청회에서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동 법률 시행령안은 전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사항을 매우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시행령안 마련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곧바로 발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에서는 부정청탁의 공개제도와 신고 및 처리체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1. 부정청탁의 공개제도

1)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발제문 24 – 26면 참조)

시행령안 제5조는 법 제7조 제7항 및 제8항의 위임을 받아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개기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전체 공개기간 또는 최소한의 공개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공개기간의 불특정이 공개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발제문 25면)에서 인권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변호사법」 제96조의5 제3항 및 제5항은 징계사실의 공개와 관련하여 그리고 동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은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대상자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에서 공개기간의 특정(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구체적인 경우에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에 규정)[1]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청탁금지법 및 동 시행령안의 공개대상은 공개범위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2]

따라서 공개기간의 특정의 필요성은 지나치게 단기간의 공개로 인하여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

1) 【변호사법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⑤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시행령 제23조의2(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①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변호사 징계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처분정보"라 한다)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생년월일·소속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실의 주소·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주소·명칭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영구제명·제명: 3년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4. 견책: 3개월
③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로 변호사 징계 내역을 두고,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 징계처분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④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서 변호사의 성명 및 사무실의 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을 말한다)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7조 제7항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부정청탁의 내용"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지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공개대상자의 인권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공개대상이 되는 부정청탁의 범위의 불특정성과 관련하여(발제문 24 - 26면 참조)

법 제7조 제7항 및 제8항 그리고 시행령안 제5조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할 뿐이고 공개대상이 되는 부정청탁의 대상자와 행위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용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물론 부정청탁행위 자체는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을 통하여 특정된다.

그러나 법 제7조 제7항은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징계처분이나 혹은 부정청탁과 관련한 (과태료 재판 및 부정청탁 후 부정처사죄의 재판의)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즉 동 조항은 다른 법령이나 각종 공무원 행동강령과는 달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 사실의 공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그런데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공개시의 필요적 고려사항은 (시행령안 제5조 제1항 제3호를 제외하고) 자칫 과태료부과나 형사처벌 사실만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런데 이것은 법 제5조 제1항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즉 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 제22조 및 제23조의 처벌조항과 상관없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직접청탁도 법 제5조 제1항 위반이 된다. 이 때 공직자가 직접 부정청탁한 경우는 법 제21조에 의하여 징계대상이 되지만 공직자 등이 아닌 자가 직접청탁한 경우는 제5조 위반은 되지만 법 제21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의하여 제재되지 않는다. 즉 부정청탁하는 행위와 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각종 행위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공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더욱 불명확하게 만든다.

그리고 예컨대 ①공직자 등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1회의 직접 부정청탁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지(재차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②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무 위반행위(징계대상(법 제21조))도 그 공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시행령안 제5조 제1항이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부정청탁의 공개범위는 가능한 한 특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소속기관의 재량에 따라 예컨대 1회의 직접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론적으로는 ①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사실(제21조, 제22조 그리고 제23조)의 공개가 아니라 법 제5조 위반행위에 대한 공개제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개대상이 되는 부정청탁의 행위유형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징계대상도 형사처벌대상도 되지 않는 공직자 등 외의 직접부정청탁도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나 부정청탁 신고의무위반행위 등). ②부정청탁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필요적 공개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공개한다"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③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경우보다 가벌성이 중한 수수금지금품 등의 공여 및 수수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입법론적으로는 부정청탁과 함께 수수금지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행위에 관해서도 공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부정청탁의 공개에서의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2)"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령안 제5조 제1항은 부정청탁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의 필요적 고려사항으로서 ①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②동항 제2호에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첫째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각종 공무원 행동강령이 징계처분과 형벌부과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공개범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이것은 특히 법 제5조 제1항이 "누구든지" 부정청탁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직자 등이 다른 공직자 등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부정한 내용의 청탁을 하는 행위는 제23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지만 제21조에 의하여 당연히 징계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징계받은 사실도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물론 공개대상은 부정청탁과 관련한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처분을 받은 행위도 공개대상에

포함되지만 고려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② 둘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를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정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 제7조 제7항 및 제8항은 징계처분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만을 공개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공개여부는 임의적이라는 점(“공개할 수 있다”(법 제7조 제7항)) 그리고 공개범위에는 인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을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정한다고 하여 법령에 위배되거나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형법」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금 당장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수도 그리고 무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즉 여전히 해당 행위의 유ㆍ무죄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셈이다. 따라서 시행령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유죄의 확정판결과 함께 기소유예처분을 동등한 지위의 제재인 것처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소유예처분 대신 징계처분을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은 임의적 고려사항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4) 공개시기

“3)”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신고 및 처리체계(발제문 30 – 53면)

시행령안에 정한 신고 및 처리체계는 상위법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절차상 모순이나 흠결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다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1) 청탁금지법의 신고 개관

참고로 청탁금지법의 신고체계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직자 등의 보고의무, 둘째 자수규정 그리고 셋째 공익신고가 그것이다.

공직자 등의 보고에 해당하는 것은 ①부정청탁의 신고(법 제7조 제2항 및 제6항; 시행령 제3조), ②수수금지금품의 제공 등(제9조 제1항(배우자의 금품수수 포함) 및 제6항; 제7조) 그리고 ③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및 초과사례금의 신고(제10조 제2항 및 제5항) 등이다. 동 보고의무의 이행으로 제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수(自首)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법 제15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공익신고의 성격을 갖는 것은 법 제13조(시행령 제13조)이다.

2) 수수금지금품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과태료부과 결정(법원) 및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세입조치와 관련하여(발제문 33면)

시행령 제8조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동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소속기관은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세입조치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공립학교 및 그 법인 등의 경우 세입조치가 가능한 반면 사립학교 및 그 법인 그리고 민간언론사의 경우 세입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본래 수수금지금품 등의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형벌부과대상인 행위인 경우 해당 금품 등은 몰수대상이 되지만 과태료부과대상인 경우 명문의 몰수규정이 없어서 그 처리가 곤란하다(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

3) 신고처리와 관련하여 초과사례금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제문 38면 이하)

시행령안 제13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등의 적용 대상에서 초과사례금(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초과사례금을 통한 수수금지금품의 제공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4)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청취와 관련하여(발제문 40면)

시행령안 제14조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시행령안 제14조 제1항).

그런데 시행령안 제13조는 법 제13조에 정한 "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행령안 제14조는 법 제13조가 아니라 법 제12조에 대응한 규정이어서 시행령안 제14조가 제13조를 위한 의견청취 등의 조치에 관한 것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시행령안 제15조 이하와 제13조가 그 내용에 있어서 제14조에 의하여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령체계상 시행령안 제14조는 법 제12조에 대응하는 위치인 시행령안 제13조 앞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한다.

5) 청렴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시행령안 제19조)의 법령체계상의 위치

청렴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한 시행령안 제19조는 조사기관의 처리 등(제18조)과 조사등 결과 등의 통보(제20조)에 관한 규정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제20조가 특별히 제19조에 정한 청렴자문위원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자칫 조사기관의 일련의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중간에 제19조를 위치시킴으로써 내용상 단절을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다.

6) 신고 및 처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결여

입법론적으로 신고 및 처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소속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토론문 5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
김 재 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김 재 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

-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

- 하지만 전국의 어민을 비롯한 농축산·외식업 관계자들 모두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소비 감소를 우려하여 음식·선물의 금지대상 제외 기준 가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해 왔고, 대통령도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냐”며 이 법령에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여러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 경직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

- 특히 수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 법 및 시행령(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어업인구 감소 및 노령화, 연근해 수산물 생산 부진 등으로 인한 수산업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쟁력을 제고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고수익·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수산산업인의 생산 의지가 꺾이고, 수산산업이 위축되는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됨

- ’15년 국내 가계의 수산물(수산가공품 포함) 총 소비액 8조8,803억원 중 21%인 1조8,648억원 정도가 설과 추석에 팔리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표적인 명절 선물인 굴비는 명절에 팔리는 비중이 최대 95%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또한 수협중앙회에서 판매하는 명절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전체 상품(503개) 중

5만원 이상의 상품이 60%(302개)를 점유하고 있으며, 갈치의 경우 92%, 전복의 경우 80%, 굴비의 경우 62%가 5만원 이상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굴비의 경우 원료어인 참조기 가격이 급등하여 산지에서도 5만원 미만의 선물용 상품은 찾기 어려움

◎ 이 법령의 시행으로 수산물 피해액은 1조1,1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수수 금지 금품등 기준액을 5만원으로 정할 경우 피해 추정액〉

(단위 : 억원)

구 분	명절기간 매출액(추정)	피해 추정액
전체 수산물	18,648	11,196
굴비	4,200	2,611
갈치	1,050	966
전복	1,050	841

◎ 이러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대로 5만원 이내의 선물만 수수 금지 금품에서 제외될 경우, 국내 경기 불황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명절 수산물 소비마저 급감하게 되면 어가 경제 악화 및 수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

◎ 물론 청탁금지법에서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이 법은 수수 금지 대상자 및 금품의 범위가 너무 넓고, 뇌물수수 공무원의 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공무원등(배우자 포함)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직무관련성'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 개개인 사이의 선물을 위한 물품 구입시에도 '상대방이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선물하려는 물건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직무관련성의 의미는 무엇이며 선물하는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었다고 보여질 여지는 없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 공직자등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넘어 일반 개인의 선물하려는 의사 및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국민들이 소비심리가 위축될 소지가 다분하며, 특히 외부변동요인에 따라 소비량이 크게 영향을 받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음

◎ 먹거리의 원재료인 수산물이 업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 및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고수익·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의 산물인 점 등 현실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싱싱하고 품질 좋은 안전한 바다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수산산업인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이 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에서 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림

토론문 6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김 홍 길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김 홍 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금품수수 금지 대상의 음식물·선물 범위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시켜야
FTA 등 개방화에 희생당한 농어민이 살아갈 수 있고
미풍양속을 유지하여 훈훈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한우 농가 등 농축수산인들은 청탁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법인데 ‘옥의 티’를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 한우농가 등 농축수산인들은 청탁금지법은 국가를 맑게 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간 희생·외면당한 농축수산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국내산농축수산물을 금품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도 청탁금지법의 목적달성에 차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2. 국내 농축수산물의 특성의 이해, 농축수산업의 현실감안과 가치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 그간 농축수산업은 세계화를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 UR·WTO·FTA를 체결할 때마다 희생되어 왔으며, 피나는 노력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왔지만, 날로 거세어지는 외국산의 수입으로 아직도 풍전등화에 있고 실제로 92년 UR 이후 지금까지 농민은 570만에서 230만으로 절반이 줄어든 실정이며 도농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60%대로 하락하였습니다.

- 잘 알다시피 선진국은 튼튼한 농업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가 특별히 보호 육성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농업이 가지는 비교역적기능이 농민의 생활수단 차원을 벗어나 농촌 환경 유지, 자연환경보존, 사회정서 유지기능 등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공동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편의적인 판단은 금물이며 세심하게 배려될 것은 배려하는 것이 사회정의이고 국가신뢰가 아니겠습니까?

-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데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안을 보면 농어민에게는 부당한 처분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 더욱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헌법은 농업의 이런한 특성과 가치 때문에 헌법 제119조 2항(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등) 제123조 1항(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제123조 4항(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가격안정도모하여 농어민 이익을 보호)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첨1)

(농축수산물의 특성 이해)

- 국가가 인정하는 유전자원 보호대상임
  한우의 경우를 보면 한우의 유전자는 세계 유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가지는 기후풍토에 의해 그 맛과 기능은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국가는 법적으로 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한편 100대 민족문화 상징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5천년을 이어온 민족혼이 배어있고 지금은 홍콩 등 세계 시장에서도 일본이 자랑하는 와규를 앞서고 있는 한민족이 지켜야 할 문화 유산입니다.
  특히 한우농가의 현실은 FTA 이전에 16만 농가에서 10만 농가로 줄어들고 최근 2011년부터 작년 4월까지 소한마리 30개월을 키워서 100만 원 정도 손해 보다가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이제 가격이 회복되어 이익을 내고 있는 실정

입니다.

10만 농가가 평균 26두 정도 키우고 있어 연소득은 도시근로자의 절반수준의 소득밖에 되지 않아 소비자의 가격 부담은 있지만 농가는 아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FTA이후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가의 소득이 아직도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금품가액 기준이 미치는 영향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가액(시행령 제6조 별표 1) :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한다.

1) <u>한우의 경우 가액기준이 미치는 영향</u>

» 명절 선물 수요

○ 양대 명절 소비 평월의 1.6배 수준임(2015)

- (평월) 78천두 → (명절) 125천두

○ 한우선물세트 99%가 5만원 이상임(10만원이상 93%)

○ 양대 명절 소비수준 : 8,300억원

- 소비위축(50%영향 시) 4,150억 원

» 식사가액 상한이 한우 요리 불가

○ 3만원은 1인당 식단가의 절반에도 못 미침

- (중식 33천원, 한우 75천원, 일식 80천원)

○ 식당의 한우소비 60%감소 : 6,000억 이상 피해

- 한우고기의 음식점 소비 40% 점유 수준

» 전체 한우소비 감소액 : 1조원 이상 피해예상

2) <u>농산물의 피해</u>

» 2014년 농협유통의 사례

○ 명절의 과일판매실적 : 설 50억, 추석 60억

- 평월대비 208% ~ 250%수준

○ 명절 인삼판매 비율 : 40%

3) 수산물의 피해

» 수산물 연간 소비액 6조7천억 가운데 22%명절매출

○ 명절 수협의 수산물 선물세트 196개 품목중 55% 5만원이상

- 50%매출 감소시 최고 7천300억원 피해추정

4. 농업계 입장에서 선물·식대 금액제한의 문제점과 부작용

◎ 가액산정이 입법취지와 모순되고 설문내용이 피상적임

- 가액기준 설정 시 고려된 사항에서 입법 취지를 보면 공정한 직무수행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 신뢰 확보의 우선은 입법자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신뢰확보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 법 때문에 억울한 국민이 발생되는 것은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 앞에서 보시다시피 한우의 경우는 그간 개방화로 희생되고 또 다시 아무 죄 없는 농가만 희생되어야 하는 실정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도외시 하는 것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처사입니다.
  -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때 임금의 한마디가 추상같던 시대에도 세종대왕 때는 문제가 많은 토지세를 고치는데 5번이나 신하들의 신중하자는 의견 때문에 연기되다 13년 만에 실시한 적이 있듯이 지금 우리는 좋다고 하는 많은 제도를 만들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국가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진실된 자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국민의식기준 설문조사(15.7월 1,500여명 대상)시의 설문형태입니다. 당시

다른 분야와 달리 농업계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집회도 한 적 있는데 설문 내용에는 농업계의 실정은 설명도 없이 설문조사를 하면 국민 누구라도 청렴 국가를 여망하고 있는데 그 누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겠으며, 농업계의 어려움과 피해를 이해하고 했겠습니까?

- 권익위원회가 인용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도 보는시각에 따라 크게 다를수 있고 수량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면과 형평성에 더 큰 시각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권위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농어민에게 불리한 자료만 인용한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 농업계에는 국가신뢰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 국민을 위한 개방화(UR·WTO·FTA)때마다 희생되어 온 농업계가 농업의 기능과 산업의 실태를 보아 조금만 신경 쓰면 예외로 할 수 있는데도 사회적 약자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엎친데 덮친격이며, FTA보다 더 무서운 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금품으로써 작용이 낮습니다.

- 농축수산물은 식품이라는 용도와 유지 및 보존기간, 가치전달의 한계 등으로 금품으로써의 작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액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3만원, 5만원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의 엄격함 때문에 무조건 반송할 경우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변질되기 쉬워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 음식물·선물제한으로 금전의 음성거래가 성행할 수 밖에 없어 더 큰 불신과 부작용이 초래됩니다.

◎ 가액제한 할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억압감 발생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5. 농업계가 요망하는 것은 좋은 법인데 옥의 티를 제거하자는데 있습니다.

◎ 일반적인 정서와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과거 그 엄한시대 “가정의례

준칙"이 있어 엄청난 소비위축을 가져와 실천되지 않은 적이 있었고 그 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처벌조항까지 두고 청첩장·피로연·답례품 금지를 하였으나 다른 형태나 음성적으로 행해지다가 국가 개혁위는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정서·미풍양속 등을 과도하게 막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 초래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저희 농업계의 요구는

- 농업이 가지는 공익기능을 인식하고
- FTA 등으로 40% 관세철폐로 매번 희생당하는 실정이며
-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은 쉽게 선물이나 식사접대를 할 수 있는데 반해 보호되어야 할 국내산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막는 이율배반적인 법이 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 헌법이 보장한 농어업보화의 큰 정신을 바탕으로
- 우리 농업계가 요구하는 **금품수수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해도 헌법상 평등권위배나 자의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을 뿐만아니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의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별첨 헌법상 농축수산업 보호 및 국내농수축산물 제외시의 타당성 근거

■ 청탁금지법에 대한 의견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부합함

◎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고 규정
- **헌법재판소 2008. 4. 24일자 2006 헌바68 결정**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경제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이 용인됨을 밝히고 있음

◎ 헌법상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 및 농어민의 이익보호 의무

-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업의 상대적 불이익 및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 위한 필요한 계획수립 규정
- 헌법 제 123조 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며 농업과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수급균형, 유통구조의 개선, 가격안정의 도모, 자조조직의 육성을 언급
- **헌법재판소 2005. 5. 26일자 2002 헌바67 결정**
  농수산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존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구조는 국가경제의 기본적 토대를 형성할 뿐만아니라 사회의 질서유지와 안정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 헌법상 농축수산업 보호의 근거

◎ 경제정책적 측면

-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농축수산업이 입게 될 피해는 19조원 규모의 축산업과 4조원 규모의 과일산업, 6조7천억규모의 수산업의 위축등 농업계의 피해 불가피하다.
- 농축수산물이 국민의 삶과 국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입게될 위와 같은 경제적 타격을 방지하고 농축수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

◎ 사회정책적 측면

- 헌법 제123조 제4항은 특별히 명문으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산업화의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농어민을 사회적으로 배려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필요

■ 헌법상 평등권 침해 가능성 없음

◎ **평등권 위배여부 심사기준**

- 수익적 내지 시혜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만이 적용되는데(헌법재판소 2004. 6. 24일자 2003헌바111결정)
  특히 헌법 제123조를 비롯한 사회국가 원리라는 헌법적요청을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는 입법의 경우에는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수 없는 한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조정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며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한바 있음
  (헌법재판소 1999. 7. 22일자 98헌가5 결정)

◎ **자의금지원칙 위배여부**

- 본건 개정안은 농축수산업의 보호라는 헌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품 등의 항목에서 농축수산물등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제현실 및 미래에

대한 전망, 목적달성에 소요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 당해 경제문제에 관한 이해관계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서 경제정책적,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선택가능하고 필요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수있음.

- 특히 농축수산업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 조정은 헌법에 의하여 요청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여타 산업에 대한 보호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본건 개정안에 의하여 부득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농어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볼수 없음.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의 성격**

- 본건 개정안은 국가경제의 기본적 토대이자 사회의 질서유지와 안정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인 농축수산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농어민에 대하여 부정청탁금지법상 특별한 사회적 이익을 부여하는 정책으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짐

토론문 7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
민 상 헌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민 상 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

1. 가치의 우선순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에 있어 초미관심 사항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는 ‘경기 침체 혹은 내수 침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공직자 등의 부패 방지’라는 명분과 ‘소비의 위축 방지’라는 두 가지 의제가 충돌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하는 가치일까? 이는 따져 볼 것도 없이 정부의 투명성 확보 혹은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청산의 가치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가 농업인, 외식인 등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면, 소비 위축 방지의 가치 또한 폄하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다.**

2. 음식물 및 선물 가액 설정

만약에 공직자 등이 3만원 혹은 5만 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예외 규정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부패 현상은 근절되기 어렵다고 본다. 로비스트 혹은 이익집단 관계자에 의하면 공직자를 포획(capture)할 때, 1회성으로 큰 금액의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보다 부담 없는 식사 시간을 자주 갖고 감성이 담긴 작은 선물을 자주 제공하는 것이 ‘온정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가액을 시행령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공직 사회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는 없다.** 이왕 가액을 설정할 것이라면 농업과

외식산업 등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결정이 필요하다. 저녁에 고기 집에서 음주를 하는 것, 호텔에서 개최되는 사은회 혹은 각종 잔치 등에 참석하는 것은 중산층 이상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일상에서도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은 접할 수 있는 우리의 외식 문화다. **한우 고기와 호텔 뷔페에서 식사와 함께 반주를 곁들이는 경우에 그 가격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가? 이 경우에는 적어도 1인당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식대가 계산될 것이다. 고깃집 등에서의 식사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경우,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겠는가? 농축수산업과 외식산업,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는 도미노처럼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3. 음식물 및 선물 가액 설정 논란

금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시행령 제정에 앞서 권익위원회가 전문가·학계·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각계 이해 관계자들은 음식물 및 선물 가액 설정에 대해 우려와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하"**의 **기준은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경찰, 세무 공무원, 교수, 기자가 식사를 하면 누가 밥값을 낼까? 답은 '식당 주인'이다. 식당 주인은 사회적 약자다. 여론에 등 떠밀려 시행령이 제정되면 식당 주인들이 고스란히 입을 피해가 눈에 선하다. **음식물 등 선물 가액의 설정은 외식산업뿐만 아니라 농축수산업, 유통업, 관광업, 일련의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에 침체의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토론과 경청을 통해 농업인과 서민자영업자들의 진솔한 의견이 오롯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국민 정서'를 내세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가액이 설정된다면 이는 섣부른 판단이 될 것이다. **물가 상승률, 관광산업 등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 볼 때, 5만원 이상 대의 가액 설정이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문 8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 재 현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 언론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청탁금지법 시행령 의미와 개선방안 -

박 재 현 (중앙일보 논설위원)

1. 혁명적 발상이 필요한 때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논쟁을 촉발시켰다. 기관 따라,사람 따라 다양한 의견과 지적을 내놓고 있다. 내가 속한 중앙일보 내에서도 소속원들의 가치관에 따라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회가 해당법을 만들면서 국회의원과 정당인, 시민단체 종사들을 제외하고 언론기관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원들을 법적용 대상자에 포함시키면서 논쟁의 수위도 그만큼 높아졌다.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국회의원이 주 적용대상인 이해충돌방지조항이 입법화 되지 않으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제어장치마저 피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 변질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법을 무조건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당초 입법의 취지가 “혁명적 발상을 통해서라도 우리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더 되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 이 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갖는 것도 좀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교정을 위한 것이지 폐지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입법의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이나 ‘스폰서 검사 사건’처럼 언제까지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도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만 하는 부조리를 맥없이 겪어야 할 것인가.

법을 시행하기 전부터 일고 있는 소모적 논쟁은 오히려 사회 갈등을 더 부추기 우려가

큰 만큼 법 시행을 위한 긍정적 접근과 함께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려 한다.

2. 국가 신인도 높이는 계기돼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패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대해 이론을 달거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정당인, 시민단체 종사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법의 목적과 취지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일 것이다.

세계적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올해초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 이후 7년 연속 정체 상태다. 국가별 순위는 조사 대상국 37위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국이 168개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상위로 평가할 수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34개국 중에선 하위권인 27위에 불과하다. 아시아권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일본, 카타르, 부탄, 대만보다도 뒤지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교역량, 민주주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심이 상하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신인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부패의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공직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면이 더 크다. 입안을 주도했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전 대법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외부의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즉, 청탁자의 유혹이나 압력에 대해 "이젠 김영란법 때문에 안되는 것 아시잖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물론 다른 직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서민경제 타격 최소화 방안 찾아야

문제는 관련법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분야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서민 경제에

많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때문에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화훼산업, 농축산업, 외식업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계속해 토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권익위원회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탁방지법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1% 안팎이란 내용이 보도돼 관심을 끌었다. 해당법이 시행된다고 선물수요가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일부 언론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자기 돈으로 굴비나 사과도 사먹지 않았느냐며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비판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는 심리'라는 또 다른 측면을 고려할 때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단지 1% 안팎이라고 단정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돼 있는 시행령의 내용을 현실에 맞추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법이나 시행령은 국민들의 냉소를 받을 수 있고,이는 국가의 제도나 법 취지에 대한 거부감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선 우리나라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9조3368억원(2014년기준)인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접대비를 임금인상이나 임직원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음성적 자금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4. 사회 전반으로 확대돼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것을 놓고 과잉입법과 평등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하지만 추후 국회의원과 정당인,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 의료계와 변호사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비판의 강도는 줄어들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의 주장도 이같은 기류를 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중인 사건의 본질도 기존의 관전 포인트와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질은 크게 변한게 없고, 순서만 조금 바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분야 이슈 중 하나는 한 화장품 회사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사건이다. 과거 법원과 검찰에서 중요 보직을 맡았던 변호사가 '공권력의 사유화'를 마구잡이로

한 것을 보면서 허탈해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한다. 부정부패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외가 계속되는 법적용이 이어질 경우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 억울해 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며 청탁금지법이 하루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들이 좀더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9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송 준 호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 뒷걸음치는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안 -

송 준 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흥사단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3년에 우리 민족의 선각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한의 독립과 번영의 초석을 이루고자 창립하였다. 이러한 가치에 따라 우리는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 특정 지역의 사익을 떠나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여러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투명사회운동이다.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이루려면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이어야 한다. 부패하고서는 정의로울 수가 없다. 부패한 나라치고 행복한 나라는 없다. 사회가 부패하면 뇌물을 주는 사람만이 그 혜택의 결과로 행복해할 뿐이다.

- 공무원행동강령은 이미 공직사회에 뿌리가 내려 있다.

공직자 중에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민원인이 밝힌 숫자이다. 여기서 금품·향응·편의 제공이라 함은 시행령안의 초점인 선물, 음식물 접대를 말한다. 그만큼 우리 공직사회는 상당한 수준으로 깨끗해졌다. 세계 부패 지수가 37위라 하여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일상의 소소한 부패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실례 중의 하나가 민원창구에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돈을 건네거나, 교통위반 시 교통경찰관에게 면허증을 돈을 함께 건네는 일은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깨끗해져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다. 오늘 토론하는 주제인 청탁금지법의 뿌리가 바로 행동강령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은 이미 공직사회에 뿌리가 내려 있다. 가령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음식물 접대의 비용을 3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대부분의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아예 음식물을 대접받거나, 선물을 받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행동강령은 민간 대기업에도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청탁금지법 제3장이 규정하는 금품 수수의 문제가 일반 공직자에게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공직자가 공무원행동강령을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최고위급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을 받고는 대가성이 없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작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벤츠 검사는 대가성이 없다고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가? 이를 단죄하는 것은 기존의 법체계로는 불가능하였기에 청탁금지법이 탄생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만 적용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금품·향응·편의와 관련된 업계가 고사하거나 경제 전반의 활성화가 위축된다는 것은 과장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는 선동에 가깝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이 모순인 것은 우선 이 법이 마치 민간의 모든 금품·향응·편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있다. 이 법은 오로지 공직자에게만 적용하는 법이다. 공공성이 큰 언론기관과 사학의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근로자 19,312천명(2015년 8월 기준)의 10%도 안 되는 비율이다.

- 국민들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자체를 반대한다.

시행령안에서는 국민들의 정서와 달리 음식 접대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한도를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이 금액은 공무원행동강령 보다도 완화된 수치이다. 국민들의 정서처럼 아예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관련 업계가 매출이 반 토막이 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음식 접대, 선물, 경조사의 절반은 공직사회에서만 존재하였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청탁금지법은 금지하자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행령안은 선물 가액이 5만원으로 명시되고, 경조사비는 종전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업계는 더 호황을 누릴지도 모른다. 벌써 일부에서는 선물 가액을 5만 원 가량으로 해야 하는게 아닌가? 경조비도 10만 원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무원행동강령의 기준에 맞추어 책정하였던 가액을 이번 시행령안으로 인해 올려야 해야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가액을 올리면 서민업계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가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서민경제는 더 살아날 것이고, 고액의 거품은 빠져서 오히려 소비를 높일 수 있다.

이제 시행령안은 입법예고가 되었고, 40일간의 기간을 거친 후 공포한다. 논란의 초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음식물·선물의 가액과 경조사비에 있다. 가액의 결정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도 하였고, 별도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유감인 것은 최저금액을 더 상세하게 구분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흥사단에서 자체 조사한 바로는 각각의 가액에 0원을 넣은 결과, 절반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일체 음식물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물 역시 마찬가지이고, 경조사도 공직자는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라는 준엄한 의사표시이다.

-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해가야 한다.

일부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정한 가액을 그간의 물가를 반영하여 인상할 것을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반부패청렴 문화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간 가액의 변함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청렴문화가 좋아졌다는 의미이다. 가액의 실질 가치가 낮아져가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턱없이 멀다. 선진제국에서는 공직자가 음식물을 접대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선물이라고 해야 기념품 수준일 뿐이다. 경조사에 민원인을 초청하여 경조사비를 접수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청렴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에도 진입할 수가 있다. 부패문화로 인한 조직사회는 매우 불공정 사회이다. 부패문화의 관행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그들만의 사회이므로 사회는 더욱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의 가액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은 그간의 적폐를 차단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부패문화에서 청렴문화로 자리를 바꾸어가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의 가액 기준은 공무원행동강령 그대로 가야 한다. 그것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도 그러하다. 절대 화폐금액을 그대로 가면 물가 변동에 의하여 실질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청렴문화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안에서 음식물과 선물의 금액은 공무원행동강령의 3만원 그대로, 경조사비 역시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원 그대로이어야 한다.

<u>농수축산업계를 비롯해 화훼업계와 외식업계에 바란다.</u>

우리가 언제까지 공직자를 붙들고 미풍양속과 사회상규라 하여 구습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이제는 부패의 불공정 문화를 지양하고 새로운 청렴문화에 동참이 필요하다. 1.7%의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유착에 더 이상 기대지 말고, 대신에 민간소비를 진작하는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기를 바란다. 가액을 낮추면 낮출수록 소비는 늘 것이고, 서민경제는 더욱 활기를 보일 것이다. 부패를 팔지 말고, 청렴을 팔면 더 더욱 행복감도 느끼게 될 것이다.

<u>언론기관에 바란다.</u>

지금 우리 사회가 이념의 분열 양상이 극심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그런데 유독 청탁금지법에서만은 그런 일이 없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보도에 엄청나게 많이 달린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야말로 국론 통일이다. 그럼에도 이상하리만치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절대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업계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있다. 애석한 일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언론기관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라서 그렇다고 한다. 실제 어느 언론은 사설에서 청탁금지법의 과태료 부과를 비판하며 벌금형 도입을 주장하며 청탁금지법을 적극 지지하였는데, 대상에 언론기관이 포함된 이후에는 업계의 주장만을 대변하며 법 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언론은 사회의 등불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혹독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독립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했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에도 또 큰 역할을 하였다. 요즈음은 미래

정보화의 사물인터넷 사회를 위한 도전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러한 언론기관임을 알기에 이제부터는 청탁금지법 문제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가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간곡히 ‘청탁’ 드린다.

토론문 10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

이 병 무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 소위 ‘김영란법’수정론에 대한 공직경험자의 반론 -

이 병 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

Ⅰ. 몇 가지 전제

◎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사회적 원인을 반추하고, 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 조사와 논거를 바탕으로 하였는가? 아니면 막연한 추측이나 편향된 주장인가?

◎ 이 법과 관련하여 핵심 당사자 그룹인 공무원들의 입장, 특히 국민과 접점에 있는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가?

◎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인가? 아니면 온정과 인연이 지배하는 부패공화국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가?

Ⅱ. 소위 '김영란법' 시행에 관한 수정 의견들

◎ **이상민 의원** - **"김영란법, 애매모호·과잉입법…위헌성 우려"** : 2016.5.12. 한수진의 SBS 전망대

- (김영란법은)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고위 공직자에서 다른 직군으로 넓혔다. 이 과잉입법 및 부작용 논란이 벌어졌다. 시행 전 국회가 자기 시정 기능을 발동해 개정해야 한다.(중앙일보)
- 농수산 식품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원칙 없이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그런 건 옳지 않은 방식"이라며 "당초 고안했던 대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한정하면 취지도 살리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발언.(포커스뉴스)

◎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 2016.5.12. 중앙일보

- 법 시행 전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로 대상을 한정하는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법사위에서 대상 축소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 **한국농축산연합회 참여단체** : 2016.5.13. 서울신문

-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 대상에 포함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
- 주요 농축산물의 40%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과일의 경우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법 시행 시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로 대체될 것

◎ **온라인 '맘카페'** : 2016.5.13. 뉴시스

- 오히려 김영란법이 스승의 날 선물 상한액을 정해준 꼴

◎ **"김영란법 시행 늦춰 내수 살려야" - 중기단체장들 성토 쏟아내** : 2016.5.15. 한국경제

- 법 취지가 좋아도 부작용이 많고 시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다.

5만원짜리 밥 먹고 3만원은 카드 결제한 뒤 현금 2만원을 내면 법을 피해갈 수 있다. 식사와 선물의 상한 금액을 정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는 것은 소상공인이다. 고가의 선물과 접대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내수를 살리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농수산물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명절 매출이 하락할 것이고 화훼업계와 요식업계도 마찬가지이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 선물과 식사 접대에 대한 정서와 의식 변화가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휴지 조각으로 바뀔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전에 유예기간을 두는 등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 2016.5.16. 농민신문

-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업은 물론 사료·택배·외식산업을 비롯한 전후방 산업도 쑥대밭이 될 것

◎ **연예계 관계자** : 2016.5.18. 세계일보

- 연예계는 주로 기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정보를 교류하는 업무
  (한 번 만나면 음식 값, 술 값, 커피 값. 공연초대권 제공 등)
- 법 시행되면 신고포상금 제도 등으로 파파라치 등 다양한 형태의 제보자가 많아질 것

◎ **법무법인 율현** - **김영란법 시행령은 잘못된 처방전** : 2016.5.18. 농민신문

- 공직자가 부패할 경우 뇌물 요구 등 압력을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가 나타난다. 부정부패의 기반은 지나친 규제다. 규제를 틀어쥔 공무원들이 힘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없애는 첫 단추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그런 전제 없이 시시콜콜 말단 공무원들의 식사 값, 명절 선물 리스트를 단속해봐야 만사물거품이다. 김영란법이란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될 뿐이다. 뇌물은 좀 더 은밀해질 것이고 지하경제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더욱이 권익위의

시행령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판로를 찾지 못한 고급 농축산물 등은 고사될 것이다. 반면 값싼 미국산 쇠고기, 중국산 농산물이 선물용으로 날개를 달 것이다.

- 그나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자체 품종 개발 등으로 고군분투해온 농축산업의 여력마저 고갈되지 않을 수 없다. 김영란법의 약효가 아무리 좋다 한들 환자 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버리면 경제 활성화는커녕 농축산 경제를 벼랑으로 내몰 것이 뻔하다.

◎ **윤기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 - **꿀벌의 우화와 김영란법** : 2016.5.19. 브릿지경제

- 학연과 지연, 온정주의 문화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접대와 선물 관행이 유지되어야 '꿀벌'들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고 경제가 굴러갈 수 있다.
-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직한 관료보다 정직한 관료가 존재하는 사회가 더 나쁘다"고 갈파한다.

Ⅲ. 수정 의견에 대한 사안별 사견(私見)

1. 법 시행 전에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면 법안의 큰 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수정 가능하겠지만, 시행도 안 해 보고 이런 저런 문제가 예상된다는 주장보다 시행하고 나서 면밀한 분석평가를 통한 보완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음

〈같은 취지〉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6.5.12. 중앙일보

- 우선 시행한 후 국민이 용인할 때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

● **전성이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2016.5.13. 서울신문

- 죄의 종류와 형벌 내용을 법률로 적용하려면 조문에 일일이 열거해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일단 시행한 뒤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 나아가 서로가 접대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로 국민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2. 김영란법 시행되면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 부정부패나 뇌물로 경제를 살린 국가가 있는가? 지나친 억측은 국격 훼손이고 공직자들에 대한 모독임. 부정부패가 감소되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도 있음

〈같은 취지〉

-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 : 2016.5.13. 서울신문
  -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거꾸로 부정부패 감소에 따른 긍정적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부패인식지수(CPI)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회 투명성이 높아져 CPI 지수가 1% 오를 때 1인당 GDP는 연평균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매일 사설 – 법 시행도 안 해보고 흠집만 내선 안 돼** : 2016.5.13. 울산매일
  - 이 법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잖은 후퇴.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졌고, 100만 원 이하는 직무연관성을 요구했고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로만 축소하는 등 당초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 그런데도 이 법이 시행되면 경제가 당장 결딴이 날 것처럼 난리법석이다. 특히 얻어먹고 받아먹는데 이골이 난 계층에서 반대여론을 띄우는데 더 열을 올리고 있다. 고가선물용품을 생산하는 농축산어민들을 방패막이로 세우고, 저들은 마치 이 논쟁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수법이다.
-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2016.5.13. 민중의 소리
  - 농민을 앞세워 김영란 법을 누더기로 만들 소지가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벌써부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김영란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농민대책의 부재가 본질이다.
  - 권력과 자본에서 출발한 부패구조는 필연적으로 농민, 노동자 등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농민도 잘 산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 부정부패를 독려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 기막힌 콘셉트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경제사범을 풀어줘야(광복절 SK 최태원 회장 사면) 경제가 발전한다'에 이은 코미디 2탄인가?
- **최영일 시사평론가** : 2016.5.13. SBS CNBC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경기가 침체된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가 '뇌물공화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노회찬 의원의 지적). 김영란법을 시행했을 경우 내수경기에 주는 마이너스 효과는 0.86%에 불과하다는 지표가 나왔다.(한겨레)
  - 관공서를 중심으로 영전을 위해 주고받던 난, 여의도 정가 주변에 한우 및 한정식집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국 규모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이 있을까? 만약 타격이 있다면, 그 사실 만으로도 우리가 사회를 자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 **현대경제연구원** : 2016.5.18. 주간경향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현대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김영란법으로 선물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도 최소 0.005%에서 최대 0.86%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아주 많아야 기존 선물 수요의 1%정도만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 대표적인 피해산업으로 지목되는 화훼농가에 대해서도 현대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 도입시 화훼산업에 큰 충격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화훼농가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하고 있다.

- 게다가 실증분석 결과 김영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1% 개선될 경우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하며,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부패지수가 개선된다면 경제성장률은 0.65%포인트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오히려 김영란법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경영효율화가 증대되고, 산업 전반에 건전한 경쟁구도가 확립되며,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 우리 경제에 더 유익할 것으로 분석했다.

●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 "김영란法은 골프 대중화 촉진제"** : 2016.5.19. 이투데이

- 회원제뿐 아니라 퍼블릭 골프장도 경영수지가 빠르게 둔화되겠지만 골퍼 입장에선 저렴한 비용으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만큼 골프 인구 증가와 산업 활성화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
-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접대 골프가 줄고 그린피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더 많은 내장객을 유치해 수익성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접대 골프로 인한 수요는 일반 골퍼들의 개인 수요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골프장 산업은 건전하게 진보할 것.

3. 다소 불공정하고 부패하더라도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청탁과 부패가 어떻게 청렴과 공정사회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함
- 역으로 우리보다 잘 사는 다수 OECD 국가들은 부패한 국가이고 뇌물천지인가?

〈같은 취지〉

● **모 기업 홍보팀 관계자** : 2016.5.14. 머니위크

- 내수경기 위축이나 인간관계가 단절될 것이라는 주장은 권익위 기준치를 초과한 접대를 받았던 이들이 다급해서 하는 너무 나간 이야기
- 시행령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부정한 청탁을 막는다는 입법 취지를 더욱 살려야 한다.

● **박규홍 칼럼 – 김영란법 강행하라!** : 2016.5.14. 뉴데일리

- 이참에 우리 사회의 선물 관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선물 수요가 줄어들어 영광굴비 생산자가 어렵게 될 것이고, 한우 농가가 폐농할 것이고 화훼농가가 도산할 것이라는 주장이 옳은 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굴비든 한우든 난초화분이든, 생산 유통자들이 김영란 법 아래에서 건실하게 생존할 방안을 찾아야지 기존의 고가 선물수요에만 매달려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겠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게다.
- 김영란 법으로 선물 관행의 환경이 바뀌면 한우농가도 그에 맞춰 변화할 것이고, 굴비생산자들도 변화할 것이며, 꽃 재배농가도 변할 것이다. 회식이나 식당문화도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 우리나라를 투명사회로 만들어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김영란 법을 더 이상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그대로 시행을 강행하자고 우리 사회를 향하여 고언(苦言)하는 바이다.

- **[우리가 보는 세상] – 한 민간기업의 '김영란법', 그 이후** : 2016.5.16. the300
  - 이번 논쟁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적폐 해소라는 김영란법의 취지까지 흔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합리적 보완방안을 고민하되 법의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
  - 법 제정 당시 내수위축 우려에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부정부패와 적폐 속에 가라앉은 세월호등 추악한 현실을 청산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라 할 것이다.
  - 김영란법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 부정부패와 적폐 속으로 물러날 것인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 선택은 자명하다.
- **장호준 목사(故장준하 선생 아들)– 김영란법이 경제위축? 이해 안돼** : 2016.5.16. CNB뉴스
  - 아버지께서 국회의원에 당선 되신 이후, 빚쟁이들과 차압 딱지가 난무했던 이 집에 갑자기 케이크 상자들이 줄을 이었다. 당시 '고려당'이라는 이름이 선명한 포장지로 멋지게 싸여진 케이크 상자는 나를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케이크 상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고, 상자 뚜껑 안쪽에 돈을 넣은 봉투가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였다.
  - '국격'은 국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한복패션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주었으면 좋겠다. 분명한 것은 '종로 고려당'이 그 후 문을 닫은 것이 아버지께서 그 케이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 2016.5.18. CBS 노컷뉴스
  -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마련된 것, 부정부패 근절을 놓고 경제적 득실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불의한 일. 청탁과 뇌물이 오고가는 내수 진작은 바람직하지 않다.
  - 김영란법이 개정 없이 시행돼 공정하고 청렴한 한국사회가 되길 바란다.
- **박규홍 칼럼 – 김영란법 강행하라!** : 2016.5.14. 뉴데일리
  - 이참에 우리 사회의 선물 관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선물 수요가 줄어들어 영광굴비 생산자가 어렵게 될 것이고, 한우 농가가 폐농할 것이고 화훼농가가 도산할 것이라는 주장이 옳은 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굴비든 한우든 난초화분이든, 생산 유통자들이 김영란 법 아래에서 건실하게 생존할 방안을 찾아야지 기존의 고가 선물수요에만 매달려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겠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게다.
  - 김영란 법으로 선물 관행의 환경이 바뀌면 한우농가도 그에 맞춰 변화할 것이고, 굴비생산자들도 변화할 것이며, 꽃 재배농가도 변할 것이다. 회식이나 식당문화도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 우리나라를 투명사회로 만들어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김영란 법을 더 이상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그대로 시행을 강행하자고 우리 사회를 향하여 고언(苦言)하는 바이다.

4. 법 적용 대상자가 2백만명이나 된다는 주장에 대해

-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이미 상당 부분 부패와 단절돼 있고, 교사들도 같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준수 받고 있다.
- 공무원 및 교원 수가 백만이 넘으니까 김영란법으로 2백만명이 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음

-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신규 대상자가 얼마인지라는 식의 접근법이 필요해 보임

〈같은 취지〉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영란법과 공포마케팅** : 2016.5.17. 국민일보
  - 우선 법 적용 대상자가 너무 부풀려졌다. 지금도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사립학교 교사도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기준을 요구받고 있다.
  - 김영란법 때문에 내수가 위축될 것이란 주장도 과하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부정부패가 줄면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기업들이 공직자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할수록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기업의 접대비가 불필요하게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청탁하지 않는 기업은 아예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어 사회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김영란법 시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다.

5. 공무원조직 전체를 뇌물수수자로 단정하는 듯한 주장에 대해

- 대다수 공무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별다른 동요도 일절 없고 심지어 무관심하기까지 함.
- 식사대접이니 뇌물이니 하는 것들은 고위공직자나 의사결정권이 있는 직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부서 등 일부에 한정된 것으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식사를 대접받거나 선물을 받기는커녕 욕만 안 들어도 다행이라는 반응.
- 게다가 소방이나 경찰공무원들은 선물은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으니 제복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이라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
- 그럼에도 새삼스레 이제 와서 그동안 청탁과 부패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또 그것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고 지탄받아야 함

  ※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04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접대문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고 5월 16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33.9%가 '접대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면서, 접대한 대상은 '거래처'(65.5%, 복수응답), '상사·임원'(32.9%), '영업대상 고객'(29.8%), '공공기관 관계자'(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접대 대상에 공무원 수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같은 취지〉

- **김승환 전북 교육감 – 김영란법 기본정신 따르겠다** : 2016.5.16. 전민일보
  - 시행령에 개의치 않고 상위법인 김영란법의 기본정신을 그대로 따르겠다.
  - 검은 거래로 자본주의를 활성화시키고, 내수시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며, 전북교육청은 시행령에 개의치 않고 법률 그대로 따르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최재석 칼럼 – 미꾸라지 잡는 법** : 2016.5.19. 연합뉴스
  - 이 법은 지난해 3월 국회 통과까지 오랜 논의 과정에서 선뜻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들어가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진 이른바 '미생법안'. 그런데도 부작용 우려가 부각되니 안타깝다.
  -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접대문화와 청탁문화, 연고주의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가의 식사와 선물은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바라기 마련이다.
  - 헌법재판소가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에 위헌 결정을 하지 않으면 나도 해야 한다. 꼼짝없이 대상이다. 나는 이 법령을 기꺼이 지킬 각오가 돼 있다.
- **최우식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 : 2016.5.17. 광주일보
  - 법 제정 시 다소간의 논란은 있었으나 청렴사회를 만드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 **대구 수성구 공직사회 업무협약** : 2016.5.18. 경북일보
  - 수성구는 지난 16일 수성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지사, 국민연금공단 수성지사와 공정·투명하며 친절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한 청렴·미소친절 실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령 입법예고로 청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마련됐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료의 공유, 활동 지원,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등 반부패 청렴, 미소친절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Ⅳ. 맺음말

- 법안 취지를 후퇴시키는 쪽으로가 아니라 여러 경로로 지적받은 문제들(특히 쪼개기 결재 등 편법 등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후속 보완 입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법안 시행 과정에서 분석,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상시 기구 필요
- 누구라도 이 법안을 언급하면서 이법안의 적용 대상자들이 심한 모독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정치권 등에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경우, 공무원단체에서는 법안 사수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임

- 대한민국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면서 평생 직장으로서의 공직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경받고자 하는 것임

-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법 시행령(안)은 원안대로 시행되어야 하고, 향후 수정되는 방향도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화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함

토론문 11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이 원 섭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이 원 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줄것임
- 다만,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와 선물용품 등 제조 중소기업 등이** 이 법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 법의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망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현황

■ 중소기업 사업체수

구 분	전 체	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전산업	3,418,993 개 (100%)	**3,415,863 개 (99.9%)**	**2,962,367 개 (86.6%)**	354,936 개 (10.4%)	98,560 개 (2.9%)	3,130 개 (0.1%)
제조업	367,868 개 (100%)	**367,172 개 (99.8%)**	**303,202 개 (82.4%)**	54,233 개 (14.8%)	9,737 개 (2.6%)	696 개 (0.2%)

* 제조업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체 기준(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편·가공)
* 숙박 및 음식점업 : 684,478개 중 중소기업(684,408), 대기업(70)
소상공인(605,129) 〈2015년 중소기업현황, 중기중앙회, 2015. 5〉

■ 중소기업 종사자수

구 분	전 체	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전산업	15,344,860명 (100%)	**13,421,594명** (87.5%)	**5,777,765명** **(37.7%)**	3,746,546명 (24.4%)	3,897,283명 (25.4%)	1,923,266명 (12.5%)
제조업	3,770,535명 (100%)	**3,032,849명** (87.5%)	**937,387명** **(24.9%)**	1,107,772명 (29.3%)	987,690명 (26.2%)	737,686명 (19.6%)

* 제조업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체 기준(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편·가공)

■ 소상공인 : 사회 안전망 제공, 위기대처 능력 강화

▸ 소상공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수의 86.6% 차지

▸ 창업을 통해 생산적 복지기반 마련

▸ 구조조정, 정년퇴직, 청년실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비용 감소(흡수)

■ **자영업자** : **자영업자 비율 27%**, OECD평균 15%, 미국(7.6%), 일본(10.9%)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7%이며 자발적 창업보다는 **소극적인 생존전략에 의한 창업**이 많음
  -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오랫동안 **제조업 위주 산업정책**에 따른 결과물로 보고 있음
- 자영업은 일종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고 **소자본 창업을 통해 생산적 복지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도 있어 **적정수준의 보호** 필요

■ 중소기업 경영애로 : 내수침체

- '16년 4월 중소기업 최대 경영애로(복수응답)는 **'내수부진' (59.1%),** 으로 **2015년 1월 이후 15개월 연속으로 '내수부진' 1위**

〈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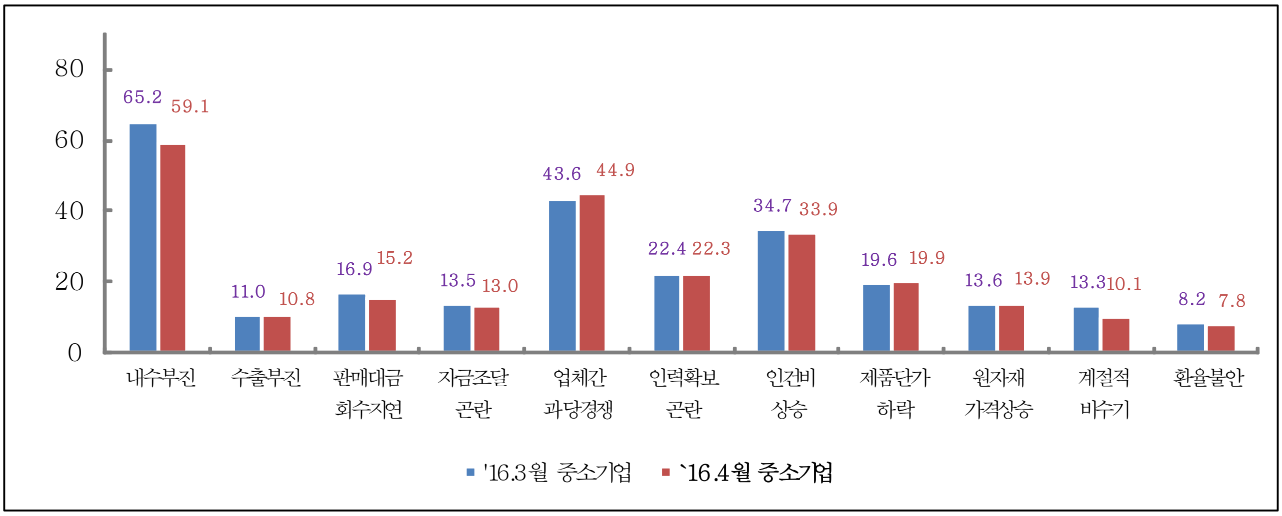

2. 중소기업계 의견

■ 금품 품목 조정 (법률)

- **(문제점)** 2백만명 내외의 **공직자 등과 관련한 소비**(식사, 선물 등) **위축**으로 **농축수산물, 화훼, 음식점업 등이 침체 우려**
  - 특히 선물·접대가 판로의 주를 이루는 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점 등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

- **(업계의견)** 법률 상 **'금품'의 범위에서 제외품목**(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을 **설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

■ 금품 허용 기준가액 합리화 (시행령)

- **(문제점)** 선물, 음식 **판매단가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수준**으로, 소상공인은 법률·시행령 시행으로 **연간 2.6조원 매출감소** 예상

  * 음식, 식료품소매, 화훼 등 관련 소상공인 509개사 대상 방문조사(소진공, '16. 4)

- 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당 월매출 31만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총 2.6조원 피해** 예상

- **(업계의견)** 식료품 유통업(84천원), 음식업(76천원) 등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허용가액 평균인 77,000원**으로 금품 허용(음식 및 선물 통일) 가액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

▶ **(음식물) 기준은 7만원**
- 자영업 중 음식점은 상권의 대표적 업종이며, 내수의 주요기준
- 유흥주점 등이 아닌 일반 식당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배려
- 음식물 기준을 낮게 잡을 경우 급격한 음식상권 위축 우려
-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 2014년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상권이 다소 살아나는 분위기였으나 이에 역행

▶ **(선 물) 기준은 7만원**
- 선물 최대 5만원 기준으로는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공인의 수제품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 고려

▶ **(경조사비) 기준은 10만원**
-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사회통념상 10만원 수준이 적정
  * 법인세법에서도 경조비 인정기준을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사회통념 기준을 고려

중소·소상공인, 『청탁금지법』개정 촉구

- 법 취지 공감하나 우리 경제·사회현실 고려 및 사회적 약자 피해 없도록 해야 -

중소기업계는 우리사회 경제·사회 현실을 고려하고 내수위축으로 사회적 약자, 특히 700만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한다.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수출·내수위축이 지속되는 우리 경제의 현실과 오랜 기간의 사회적인 분위기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 제정의 목적달성 보다는 더 큰 부작용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 및 직접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되어 소상공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며,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 또한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선물 최대 5만원 기준으로는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공인의 수제품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 시키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계는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16. 5. 23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토론문 12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이 재 완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이 재 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09. 28.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계도 동의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여부를 떠나 그동안 교육계는 제자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직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자정운동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당국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탁금지법」을 만들었다고 하였으나, 법제정 당시 상당한 논란을 초래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과 “일반 언론 종사자” 등에 대해서 법 적용을 명확히 함(『청탁금지법』 제2조의 1)으로써 지속적인 위헌 논란에 휘말리게 될 소지를 제공하였다.

특히 교원과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제5조 1항)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상충되어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준한 시행령(안)도 「청탁금지법」의 논란과 모순을 그대로 답습하게 됨은 명약관화하다.

본인은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Ⅰ. 총 론

1.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

“사립학교 교원 및 학교법인”과 “언론 종사자”에 대한 일률적 법적용은 과잉입법 논란 및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제정된「청탁금지법」은 그 적용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했다. 본 법안 "제2조의 1. 라"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누차 문제제기했듯 민간영역의 과도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로써,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해 왔지만,「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하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립학교는 국가에서 설립하는 국립학교나,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이 설립하는 공립학교와 명백히 대조된다. 특히, 이는 처벌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구성요건을 확대한 비합리적 조항임에 틀림없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다.

> **<u>벌칙적용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조항이 없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원의 기존의 해석·적용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u>** 즉, 국민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의 경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아무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처벌규정이나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이상 처벌의 필요성만을 강조, 구성요건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헌재 2012.12.27. 2011헌바117 요지, 강조는 필자)

헌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경고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종사자들은 법령에 기해 공무에 종사하고는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에 해당한다.「청탁금지법」이 '사인'을 적용대상으로 간주한 것은,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로지 '필요'에 의해서 구성 요건을 확대한 것이다. 위와 같이 헌재가 강조한 것처럼, "국민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의 경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제아무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처벌의 필요성만을 강조, 구성요건을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는 시행령(안)도 문제다. 제2조(윤리강령)에는 "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마목에 따른 언론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의 청렴성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앞서 언급했듯,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그리고 일반 언론인 들은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이상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 시행 이전에 위헌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2. 과잉입법 금지와 현 적용 규정과도 상충

「청탁금지법」 적용은 '과잉입법 금지'와 상충되며, 현 적용 규정과도 상충되어 혼선을 줄 수 있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은 정당해야 하는 한편,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 수단은 적절해야 한다. 특히 '피해의 최소성'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헌법에 적시된 '과잉입법 금지'의 적용을 받는 것은 권리이다.

현재 선거로 선출된 각 시·도의 교육감들은 「청탁금지법」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거나 무거운 '촌지 등의 근절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소위 '촌파라치'를 양산해 낼 수 있는 1억 신고포상금을 내걸고 있기도 하고, 1만원만 받아도 주의·경고·감봉·견책 등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교사가 학부모에게 자신의 집주소를 알려주는 것도 금지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서 촌지 1만원 받아도 무조건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교원은 이미 관련 규정이나 교육청이 내세우는 각종 청렴계획 등을 통해서 과중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품, 향응수수로 인한 중징계 뿐만 아니라 견책 이상만 받아도 승진 및 교장 중임에서 배제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를 받으면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을 보면, 교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제10호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나머지는 교원의 직무수행과는 상관없거나, 있어도 해당 항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無用)한 조항이다. 게다가 이미 다른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법 적용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교육부령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1. 성실의무 위반
>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   사.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   아.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이 외에도, △복종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비밀엄수의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이 있다. 각 항목별로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규칙이 위 10의 내용보다 더 교원을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청탁금지법」과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 종합대책'과의 간극을 조사하여 비현실적이거나 과중한 규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좋지만, 더 포괄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있는데 이로 인해 잘못된 법 적용이나 혼선을 빚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교육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교단에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당국에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Ⅱ. 각 론

1.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 관련

가. 관련 법령안 : 시행령안 제6조 별표 1

나. 개선 방안

- 그동안 교육계의 자정노력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이 바뀌어 학교현장은 청렴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교직윤리 확립을 위해 2005년에 교직윤리 실천헌장을 제정하였으며, 헌장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천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작금의 경제 위축과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범국민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모바일 선물(상품권, 식사권 등)의 경우 받기 싫어도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어떤 선물은 받는 자가 취소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2. '공무원 등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가. 관련 법안 : 시행령안 제9조 별표 2

나. 개선 방안

- 많은 교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 및 직무와 관련되어, 시교육청, 시교육연수원, 시교육연구정보원을 비롯해, 교원단체, 또는 외부 시민단체, 기업체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교원의 외부 강의는 전문지식의 공유 및 사회구성원 교육을 위한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이러한 실정에서 시행령(안)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의 경우 기존 지급 기준인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간당(기고는 1건당)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으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사례금은 초과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 한도까지만 지급 가능토록 정했다.

공무원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대부분의 교원들이 5급 이하로, 하루 종일 유관기관 강의를 해도 3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도 각시·도교육청별로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이 있는데(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이러한 현실에서 굳이 위 내용을 상위법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시행령(안)에 예외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 교원들과는 거리가 먼 경우다. 따라서 본 시행령안의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사례금은 초과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 한도까지만 지급 가능"에 대해서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지나친 제약보다는 이를 완화해서 원활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국공립학교 소속 교원이라 하더라도 노력이나 전문지식의 중요성 등을 비추어 보다 정당한 대가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부분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가 다른 법률이나 규칙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가. 관련 법안 : 시행령안 제4조

나. 개선 방안

- 교원의 경우 다른 법률이나 규정 등을 통해 이미 '부정청탁'에 따른 조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본 시행령(안)과 다른 법률 등이 상충되지 않도록 시행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4.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와 관련한 엄격한 기준 설정 필요

가. 관련 법안 : 시행령안 제5조

나. 개선 방안

- 본 시행령(안)은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제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제8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지 여부
>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3. 그 밖에 부정청탁 예방 효과의 달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이 가운데 "3."의 경우는 소속 기관장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경우도 명백한 기준이 설정되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시행령(안)이 되어야 함

가. 관련 법안 : 「청탁금지법」 제8조 3의 6

나. 개선 방안

- 본 법안 제8조 3의 6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면서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그 범위 내로 포함시켰다.

- 통상 학교에서는 많은 ‘행사’가 열린다.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 사업을 진행해, 그 결과로써 학예발표회, 축제, 방과후 학교 경연대회, 각종 스포츠클럽대회, 각종 경진대회(과학의 날, 영어 등) 등을 진행한다. 이 경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행사는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소규모로 이뤄진다.

  학교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일반 기업체나 다른 공무원단체, 언론사와는 실로 규모면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행사 주체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포함되고, 교육활동의 연장이라는 특수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이들 행사가 본 법률 제8조 3의 6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적용 사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사를 주관해야 하는 학교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의 위축도 초래될 수 있다.

* * *

교총 등 교육계는 물질적 촌지는 단호히 배격하고 학생·학부모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편지 나누기운동을 줄기차게 다짐하는 등 다양한 자정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처벌 및 규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정과 비리와는 타협하지 않는 사회문화와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국민 의식 정착이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서 모든 교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제 규정보다 더 강력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교직의 현실을 반영하여 교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다.

토론문 13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임 연 홍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문

임 연 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 내용은 발표된 대로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인으로부터 음식물(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내용이다.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부패순위는 OECD가입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으며,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을 뿌리 뽑겠다는 법 취지에는 농업인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공감하지만 규제의 화살이 엉뚱하게 농업계 특히 화훼업계가 타겟이 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화훼업계는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선물의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면서 위축되기 시작했다.

경조사용 소비가 화훼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현물이 눈에 보이는 화환과 난이 단속의 주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이 국민권익위에서는 농업인들의 반대와 사회 관습상 경조사에 농축산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미풍양속은 어느 정도는 인정해왔다.

사례로 2009년경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 장·차관등 인사시 받은 축하 “난”을 경매를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도 같겠지만 농업은 최소 5년 내지 10년 이상의 계획 아래 작목선택과 출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화훼 농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최소 5~10년은 유지되리라 보고 경조사용 화훼를 재배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경조사용 꽃 소비를 인위적으로 억제시키면 우리 화훼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파급효과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에도 포도 수입으로 포도농가의 타격을 우려하여 타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폐원하는데 지원 정책을 폈듯이 우리 화훼인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농축산물은 금품등에서 제외하거나 금액을 현실화하여 연착륙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2016년 4월 1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경제가 너무 위축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국회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였고 전문가들도 이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지 않았는가?

법에서도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것은 금품등에서 제외토록 하지 않았는가? 경조사에 보내는 꽃을 어떻게 뇌물이라고 하는가?

경조사에 보내는 꽃은 보내는 이의 이름을 밝히고 참석하신 모든분들의 기분을 즐겁게 해줄 뿐 받는 사람에는 경제적 도움도 되지 않지 않는가?

따라서 화훼를 포함한 농축산물은 규제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담긴 꽃을 선물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지 뇌물이 아니다.

우리 화훼인들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농업인단체와 연계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참고
자료

청탁금지법 - 시행령(안)
2단 비교표

청탁금지법 – 시행령(안) 2단 비교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마목에 따른 언론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의 청렴성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윤리강령이 법 또는 이 영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방법)**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취지 및 이유 3.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부정청탁을 한 자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부정청탁의 내용 등 신고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내용을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전항 각호의 조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제8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지 여부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부정청탁 예방 효과의 달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법 제7조제7항·제8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는 부정청탁의 일시, 목적, 유형, 소속 부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조치 및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7항·제8항에 따른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3조,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 또는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 그 사유가 있은 날 2. 그 외의 경우 : 부정청탁에 대한 조사·재판 등의 처리절차가 종료된 날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6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별표 1과 같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제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의 반환 여부 등 신고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신고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제6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 2.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위원회 : 소속기관장에게 송부 나. 소속기관 :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세입조치 3.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처리 절차(이의신청 및 재조사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다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함에 있어 금품등을 인도 받은 상태 그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촬영·녹화한 사진·영상과 제23조에 따른 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함에 있어 부패·멸실 등으로 처리·반환이 어려운 경우 인도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소속, 직급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장소 3. 강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세부 내역 5.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사례금 액수나 강의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신고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한다)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반환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관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제7조제2항·제6항, 제9조제1항·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 및 위원회는 제1항제4호, 제2항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 및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사기관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 제출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등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 이첩)**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2.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속기관 3. 법에 따른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4.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등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조사기관의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송부)**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기관의 처리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제7조제2항·제6항, 제9조제1항·제6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송부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첩 받은 신고를 다른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다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첩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등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법 시행·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 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위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청렴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20조(조사등 결과 등의 통보) ① 조사기관이 법 제7조제2항·제6항, 법 제9조제1항·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와 위원회(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조사기관 또는 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포상금·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3.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조사기관이나 위원회가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고자는 제2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3항의 기간 내에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4항 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다시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⑥ 조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리거나 위원회에 통보(위원회로부터 재조사를 요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제6항에 따른 조사등 결과의 통지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은 법 제7조제2항·제6항, 제9조제1항·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8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반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3. 위반행위 관련 신고 내역과 처리 내역 4.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해당 금품등의 종류·성질·가액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과 제8조제2항의 사진·영상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과 같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1항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등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제24조(포상금 등의 지급 업무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5항·제6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에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서 지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검토 사항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5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5항·제6항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지급업무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서약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보상금 지급신청 등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서약 실시 결과를 제1항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 및 서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 및 서약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교육 및 서약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8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제29조(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 ①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5항 단서에 따라 과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민감정보,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3278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 9. 28.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제6조 관련) 1.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한다. 2. 금품등의 종류 가.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말한다. 나.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다.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 가목의 음식물과 나목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5만원으로 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

<u>**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u>(제9조 관련)

1.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	40	30	20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은 구분된 직급에 상응하는 소속 공직자등의 직급을 직제, 임용상당계급,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	30	20

가.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다)의 경우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시간당 100만원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회 100만원으로 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3)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공공기관에 파견나와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4)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 등의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5) 1)부터 4)까지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상 지위·직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라.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MEMO

MEMO

MEMO

MEMO

MEMO